



제 7286 호

경기도보

발행일 2023년 7월 3일

발행 경기도

도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차 례

규 칙

○경기도규칙제4060호 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3

입법예고

○경기도입법예고제2023-43호 경기도어린이안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법예고 16
○경기도입법예고제2023-44호 경기도पाल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 .. 21
○경기도입법예고제2023-45호 경기도도시재생특별회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27

고 시

○경기도고시제2023-18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광주역세권청년혁신타운) 30
○경기도고시제2023-185호 산림사업법인등록취소고시 31
○경기도고시제2023-186호 평택시장당공공하수처리시설폐지인가고시 32
○경기도고시제2023-187호 양평군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고시 33
○경기도고시제2023-188호 화성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시 35
○경기도고시제2023-189호 위례신도시상생협력행정협의회규약개정고시 41
○경기도고시제2023-191호 김포한강시네폴리스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고시 45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23-526호 2023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고시 128

공 고

○경기도공고제2023-1493호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준공인가공고 130
○경기도공고제2023-1507호 운행제한위반차량에대한과태료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131

시군행정

○안산시공고제2023-157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3호선외1호선)사업실시계획(변경)열람공고 132
○시흥시고시제2023-165호 시흥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송운공원)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137
○시흥시공고제2023-1933호 시흥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배곧한울공원)결정(변경)(안)공람·
공고 139
○광주시고시제2023-465호 광주시중앙공원도시계획시설(주차장)개설공사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경미한변경),사업시행자(변경)지정및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141
○광주시고시제2023-466호 시청사진입도로(시도29호선)확포장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145
○이천시고시제2023-282호 이천시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이천시북부권체육공원)사업실시계획(변경)
인가정정고시 154

- 안성시고시제2023-206호 원곡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30호선)]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157
- 안성시공고제2023-1909호 금광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호선)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158
- 포천시고시제2023-310호 도시계획시설(유통및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160
- 포천시공고제2023-1856호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한탄강지질공원센터)결정(변경)을위한주민공람공고 162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12호 하천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164
-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13호 하천점용(변경)허가고시 165

경기도 고시 제2023-191호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7. 3

경 기 도 지 사

1. 산업단지 개요(변경)

가. 관리기관(변경없음)

- 관리기관 : 김포시

나. 조성목적(변경)

- 계획적 개발을 통한 영상·문화산업의 창작 거점 도모
- 경기도 영상위원회에서 추진중인 문화산업의 현실화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의 기반구축 및 김포시의 이미지 제고
-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업종 유치를 통한 전진기지 확보

다. 개발개요(변경)

- 명 칭 :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걸포동 일원
- 면 적 : (기정) 1,121,000㎡
(변경) 1,116,570㎡
- 사업시행자 : (기정)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23, 625호,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김관주)
(변경)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4, 608호, 609호(장기동, 한강블루)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김관주)
- 개발기간 : (기정) 2009년 3월 ~ 2021년 12월 31일
(변경) 2009년 3월 ~ 2023년 12월 31일
- 개발방법 : 전면매수에 의한 SPC 민, 관 공동개발

라. 추진경위(변경)

- '08. 05. 01 : 한강시네폴리스 김포시 선정(경기영상위원회)
- '09. 03. 06 : 산업단지 공급물량확보(1.243km²)
- '10. 01. 21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김포시 → 경기도)
- '11. 09. 06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11. 10. 21 : 수도권 정비 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 '11. 12. 23. :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1-391호]
- '14. 11. 05 :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4-5152호]
- '15. 10. 05 :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경기도고시 제2015 - 5169호]
- '17. 03. 08 :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7 - 5056호]
- '17. 07. 31 :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7 - 5196호]
- '19. 12. 27 :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9 - 5213호]
- '20. 05. 21 :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0 - 5098호]
- '20. 08. 28 :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0 - 5179호]
- '20. 12. 31 :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0 - 5280호]
- '21. 02. 04 :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1 - 5030호]
- '21. 12. 29 :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1-5220호]
- '23. 05. 31 :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3- 155호]

경 기 도 보

제7286호

2023. 7. 3. (일)

마. 분양현황(변경)

【기정】

구 분	분양대상 (㎡)	분양(임대) 가능 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비고
		계	분 양	미분양			
계	727,524	727,524	-	727,524			
산업시설구역	286,284	286,284	-	286,284	'09 ~ '21	(주)한강 시네폴리스개발	
복합시설구역	146,639	146,639	-	146,639	'09 ~ '21	(주)한강 시네폴리스개발	주1) 참조
지원 시설 구역	소계	256,550	-	256,550	'09 ~ '21	(주)한강 시네폴리스개발	
	주거시설용도	159,092	-	159,092			
	지원시설용도	36,996	-	36,996			
	상업시설용도	60,462	-	60,462			
공공 시설 구역	소계	38,051	-	38,051	'09 ~ '21	(주)한강 시네폴리스개발	
	주차장	12,481	-	12,481			
	학교	25,570	-	25,570			

주1) 세부용도별 계획은 산업단지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한다.

【변경】

구 분	분양대상 (㎡)	분양(임대) 가능 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비고
		계	분 양	미분양			
계	717,314	717,314	-	717,314			
산업시설구역	287,326	287,326	-	287,326	'09 ~ '23	(주)한강 시네폴리스개발	변전소포함
복합시설구역	130,228	130,228	-	130,228	'09 ~ '23	(주)한강 시네폴리스개발	주1) 참조
지원시 설구역	소계	251,103	-	251,103	'09 ~ '23	(주)한강 시네폴리스개발	
	주거시설용도	156,095	-	156,095			
	지원시설용도	38,659	-	38,659			
	상업시설용도	56,349	-	56,349			
공공시 설구역	소계	48,657	-	48,657	'09 ~ '23	(주)한강 시네폴리스개발	
	주차장	7,361	-	7,361			
	학교	33,034	-	33,034			
	사회복지시설	6,610	-	6,610			
	공공청사	1,652	-	1,652			

주1) 세부용도별 계획은 산업단지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한다.

주2) 분양, 미분양 구분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경 기 도 보

제7286호

2023. 7. 3. (월)

바. 입주현황(변경)

- 산업시설용지와 복합용지를 대상으로 산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입주 대상 업체에게 공급하고 사용할 예정임
- 입주시기는 수의계약, 분양공고 등을 통해 확보된 기업과 토지매매계약 체결시 반영 계획임

【기정】

구 분	업체수			면적(㎡)		
	계	21.1월 현재	향후 계획	계	21.1월 현재	향후 계획
소계	38	-	38	432,923	-	432,923
58. 출판업	5	-	5	14,478	-	14,478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11	-	11	189,966	-	189,966
61. 통신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	-	1	13,784	-	13,784
63. 정보서비스업	19	-	19	168,831	-	168,831
70. 연구개발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 기술서비스업	1	-	1	17,683	-	17,683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3. 정보서비스업	1	-	1	28,181	-	28,181

주1) 입주업체수는 산업단지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의 획지계획에 따르며, 업체수는 1필지에 1개 업체로 산정하였음

경 기 도 보

제7286호

2023. 7. 3. (일)

【변경】

구 분	업체수			면적(㎡)		
	계	23.05월 현재	향후 계획	계	23.05월 현재	향후 계획
소계	55	-	55	415,086	-	415,086
58. 출판업	-	-	-	-	-	-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	-	1	53,619	-	53,619
60. 방송업	-	-	-	-	-	-
61. 통신업	-	-	-	-	-	-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	-	-	-	-
63. 정보서비스업	4	-	4	84,908	-	84,908
70. 연구개발업	-	-	-	-	-	-
71. 전문서비스업	-	-	-	-	-	-
72.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 기술서비스업	-	-	-	-	-	-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	-	-	-
60. 방송업	8	-	8	169,335	-	169,335
63. 정보서비스업	-	-	-	-	-	-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	-	-	-
60. 방송업	1	-	1	12,665	-	12,665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	-	-	-	-
58. 출판업	-	-	-	-	-	-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4	-	4	11,406	-	11,406
61. 통신업	-	-	-	-	-	-
63. 정보서비스업	-	-	-	-	-	-
58. 출판업	-	-	-	-	-	-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9	-	9	37,486	-	37,486
63. 정보서비스업	-	-	-	-	-	-
63. 정보서비스업	-	-	-	-	-	-
70. 연구개발업	1	-	1	18,782	-	18,782
71. 전문서비스업	-	-	-	-	-	-
72.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 기술서비스업	-	-	-	-	-	-
58. 출판업	-	-	-	-	-	-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3	-	23	23,023	-	23,023
60. 방송업	-	-	-	-	-	-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	-	-	-	-
61. 통신업	-	-	-	-	-	-
63. 정보서비스업	-	-	-	-	-	-
70. 연구개발업	4	-	4	3,862	-	3,862
71. 전문서비스업	-	-	-	-	-	-
72.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 기술서비스업	-	-	-	-	-	-

주1) 입주업체수는 산업단지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의 획지계획에 따르며, 업체수는 1필지에 1개 업체로 산정하였음
 주2) 산업시설용지 내 변전소(에너지공급설비)(2,468㎡)는 해당 기능 유지를 위해 업종배치계획에서 제외
 주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중 태양력 발전업(35114)에 한하여, 건축물 지붕 또는 옥상에만 설치 가능

사. 입지여건(변경)

【기정】

시 설 명	총 계획(규모 및 용량)	사업기간	시행기관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로(일반) : 연장(L) = 445m, 면적(A) = 18,262㎡ • 대로(일반) : 연장(L) = 2,669m, 면적(A) = 86,581㎡ • 주로(일반) : 연장(L) = 6,627m, 면적(A) = 116,454㎡ • 소로(일반) : 연장(L) = 496m, 면적(A) = 4,008㎡ • 소로(특수) : 연장(L) = 791m, 면적(A) = 5,018㎡ 	'09 ~ '21	사업시행자
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계통 : 고촌정수장 → 시네폴리스 배수지 → 시네폴리스 • 총용수량 : 7,623㎡/일(감 131㎡/일) - 공업용수 : - ㎡/일(감 128㎡/일) - 생활용수 : 7,623㎡/일(감 3㎡/일) 	'09 ~ '21	사업시행자
오, 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수처리계통 : 사업지구 → 오수중계펌프장 및 압송관로 → 김포공공하수처리장 → 한강 • 오수 발생량 : 6,128㎡/일(감 6㎡/일) • 폐수처리 : 위탁처리 • 폐수발생량(일최대) : - ㎡/일(감 70 ㎡/일) 	'09 ~ '21 '09 ~ '21	사업시행자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폐기물 : 50.14톤/일(증 30.108톤/일) → 재활용 및 위탁처리 • 배출시설계 폐기물 : 99.7톤/일(증 14.672톤/일) → 재활용 및 위탁처리 • 지정 폐기물 : 54.5톤/일(증 45.812톤/일) → 재활용 및 위탁처리 	'09 ~ '21	사업시행자
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력공사 김포 변전소에서 공급 • 사용량 : 418,880(Mwh/년) 	'09 ~ '21	한국전력공사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 KT에서 공급 • 회선수 : 13,728 회선(감 5회선) 	'09 ~ '21	KT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난방공사에서 직접 공급 • 24,194(Gcal/년) - LNG 26,983(천Nm³/년) - 석유환산 28,143(toe/년) 	'09 ~ '21	지역난방공사

【변경】

시 설 명	총 계획(규모 및 용량)	사업기간	시행기관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로(일반) : 연장(L) = 445m, 면적(A) = 8,387㎡ • 대로(일반) : 연장(L) = 2,809m, 면적(A) = 93,128㎡ • 중로(일반) : 연장(L) = 5,974m, 면적(A) = 102,202㎡ • 중로(특수) : 연장(L) = 41m, 면적(A) = 498㎡ • 소로(일반) : 연장(L) = 653m, 면적(A) = 5,786㎡ • 소로(특수) : 연장(L) = 286m, 면적(A) = 1,505㎡ 	'09 ~ '23	사업시행자
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계통 : 고촌정수장 → 시네폴리스 배수지 → 시네폴리스 • 총용수량 : 7,821㎡/일(증 198㎡/일) - 공업용수 : - ㎡/일(- ㎡/일) - 생활용수 : 7,821㎡/일(증 198㎡/일) 	'09 ~ '23	사업시행자
오, 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수처리계통 : 사업지구 → 오수중계펌프장 및 압송관로 → 김포공공하수처리장 → 한강 • 오수 발생량 : 7,201㎡/일(증 1,073㎡/일) • 폐수처리 : 폐수 발생업체는 입주 제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의 제1종 ~ 제4종 사업장 입주 제한. 단, 제5종 사업장에 한하여 발생폐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전량위탁처리 시 입주 허용) 	'09 ~ '23	사업시행자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폐기물 : 50.60톤/일(증 0.46톤/일) → 재활용 및 위탁처리 • 배출시설계 폐기물 : 241.7톤/일(증 142톤/일) → 재활용 및 위탁처리 • 지정 폐기물 : 48.4톤/일(감 6.1톤/일) → 재활용 및 위탁처리 	'09 ~ '23	사업시행자
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력공사 김포 변전소에서 공급 • 사용량 : 400,050(Mwh/년)(감 18,830Mwh/년) 	'09 ~ '23	한국전력공사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 KT에서 공급 • 회선수 : 13,289 회선(감 439회선) 	'09 ~ '23	KT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난방공사에서 직접 공급 • 23,412(Gcal/년) - LNG 19,698(천Nm³/년) - 석유환산 20,545(toe/년) 	'09 ~ '23	지역난방공사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가. 기본방향(변경없음)

1) 관리기본계획 수립대상(변경없음)

-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수립은 산업단지 전체면적으로 하되, 입주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산업시설구역과 복합시설구역을 중심으로 수립함

2) 기본방향(변경없음)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8조, 제39조에 따라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를 입주시켜 생산활동을 지원함
- 산업단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사항을 고려하여 산업시설구역, 복합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 산업시설구역과 복합시설구역은 세부용도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일부 필지는 둘이상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도록 계획함

3) 추진방향(변경)

【기정】

- 산업시설구역은 주요유치업종계획과 부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배치 관리함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시 용도세분이 가능하도록 한 지구단위계획 사항을 고려하여 산업시설구역중 일부를 물류시설용도로 세분하는 계획 수립
- 업종별 배치에 맞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 확충 제공함
- 환경오염과 공해유발 업체는 배치 억제 또는 이전 유도하여 산업단지로 인한 영향 최소화 유도

【변경】

- 산업시설구역은 주요유치업종계획과 부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배치 관리함
- 업종별 배치에 맞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 확충 제공함
- 환경오염과 공해유발 업체는 배치 억제 또는 이전 유도하여 산업단지로 인한 영향 최소화 유도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계획(변경)

1) 용도별 구역 면적(변경)

구분		계	산업시설구역	복합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면적 (㎡)	기정	1,121,000	286,284	146,639	256,550	306,811	124,716
	변경	1,116,570	287,326	130,228	251,103	303,642	144,271
비율 (%)	기정	100.0	25.5	13.1	22.9	27.4	11.1
	변경	100.0	25.7	11.7	22.5	27.2	12.9

2) 용도별 구역의 세분(변경)

구분		계	공장시설 용도	문화산업 시설용도	정보통신산업 시설용도	지식산업 시설용도	복합 시설용도	기타	
면적 (㎡)	계	기정	432,923	-	401,456	13,784	17,683	-	-
		변경	415,086	-	345,348	-	-	69,738	-
	산업시설 구역	기정	286,284	-	272,500	13,784	-	-	-
		변경	284,858	-	233,902	-	-	50,956	-
	복합시설 구역	기정	146,639	-	128,956	-	17,683	-	-
		변경	130,228	-	111,446	-	-	18,782	-
비율(%)	기정	100.0	-	92.7	3.2	4.1	-	-	
	변경	100.0	-	83.2	-	-	16.8	-	

※ 산업시설용지 내 변전소(에너지공급설비)(2,468㎡)는 해당 기능 유치를 위해 업종배치계획에서 제외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중 태양력 발전업(35114)에 한하여, 건축물 지붕 또는 옥상에만 설치 가능

3)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변경)

【기정】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 등에 대한 적용기준은 산업단지계획 수립시 승인된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한다.
- 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용도별 세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김포시 주차장 조례」 제15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 산업시설구역, 복합시설구역 외에 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의 건축 및 입주는 불허한다.

【변경】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 등에 대한 적용기준은 산업단지계획 수립시 승인된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한다.
- 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용도별 세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기준이 별도로 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기준을 우선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김포시 주차장 조례」 제15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 산업시설구역, 복합시설구역 외에 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의 건축 및 입주는 불허한다.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력발전업(35114)을 위한 시설. 단 건축물(지붕 및 옥상)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산업시설용지(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1~ 산업11	산업1~ 산업11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최고층수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6m - 벽면지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형태 및 외관	• 지붕 및 옥상 - 지붕 및 옥상 층은 자유롭게 설치하되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 이 되도록 하며,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녹화를 권장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 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담장 및 대문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 시킬 수 있 도록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야간경관 -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1~ 산업14	산업1~ 산업14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최고 층수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6m(이주공장지는 3m)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상 층은 자유롭게 설치하되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도록 하며,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녹화를 권장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담장 및 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야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주차	• 시설면적 200㎡당 1대 이상

주) 기타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경 기 도 보

제7286호

2023. 7. 3. (월)

< 별표 1 > 산업시설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기정】

구분	산업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 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문화산업시설 : 정보서비스업(6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물류단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 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문화산업시설 : 정보서비스업(63)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물류단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80% 이하		
용적률	280% 이하		280% 이하		
최고층수	6층 (29m이하)	5층 (55m이하)	6층 (29m이하)	6층 (29m이하, 물류시설일 경우에 한해 33m이하)	
해당가구	산업1 (임대용지)	산업11	산업5, 산업6	산업3	

* 도시형공장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별표1-1>내 용도에 한정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별표1-2>내 용도에 한정

*** 지식산업센터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 단,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은 불허

**** 물류시설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3조에 따라 물류시설용도로 세분화하여야 함

***** 문화 및 집회시설은 도시형공장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부대시설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20% 이하에 한함

경 기 도 보

제7286호

2023. 7. 3. (월)

구분	산업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 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문화산업시설 : 출판업(58)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물류단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80% 이하
용적률	280% 이하	280% 이하
최고층수	6층 (29m이하)	6층 (29m이하, 물류시설일 경우에 한해 33m이하)
해당가구	산업2	산업4, 산업7

* 도시형공장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별표1-1>내 용도에 한정

** 물류시설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3조에 따라 물류시설용도로 세분화하여야 함

구분		산업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문화산업시설 :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59), 방송업(6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물류단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시설 : 통신업(61),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관리업(6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물류단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80% 이하
용적률	280% 이하		280% 이하
최고층수	5층 (25m이하, 물류시설일 경우에 한해 33m이하)	6층 (29m이하, 물류시설일 경우에 한해 33m이하)	6층 (65m이하)
해당가구	산업8	산업9	산업10
<p>* 도시형공장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별표1-1>내 용도에 한정</p> <p>**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별표1-2>내 용도에 한정</p> <p>*** 지식산업센터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 단,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은 불허</p> <p>**** 물류시설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3조에 따라 물류시설용도로 세분화 하여야 함</p> <p>***** 문화 및 집회시설은 도시형공장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부대시설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20% 이하에 한함</p>			

< 별표 1 > 산업시설용지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변경】

구분		산업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문화산업시설 : 출판업(58),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정보서비스업(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건축법 시행령」별표1 방송통신 시설 중 데이터센터 제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정 보통산업시설 : 통신업(6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문화산업시설 : 출판업(58),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정보서비스업(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건축법 시행령」별표1 방송통신 시설 중 데이터센터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70% 이하	
용적률	280% 이하	280% 이하	
최고층수	6층 (29m이하)	6층 (29m이하)	
해당가구	산업1	산업2, 산업3	

* 도시형공장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별표1-1>내 용도에 한정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별표1-2>내 용도에 한정

*** 지식산업센터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 단,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은 불허

**** 문화 및 집회시설은 도시형공장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부대시설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20% 이하에 한함

경 기 도 보

제7286호

2023. 7. 3. (일)

구분	산업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문화산업시설 : 출판업(58),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방송업(60)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시설 :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70% 이하
용적률	280% 이하	280% 이하
최고층수	6층 (29m이하)	6층 (29m이하)
해당가구	산업4, 산업7, 산업8	산업5, 산업6
<p>* 도시형공장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별표1-1>내 용도에 한정</p> <p>**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별표1-2>내 용도에 한정</p> <p>*** 지식산업센터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 단,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은 불허</p>		

경 기 도 보

제7286호

2023. 7. 3. (월)

구분	산업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문화산업시설 : 정보서비스업(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건축법 시행령」별표1 방송통신 시설 중 데이터센터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문화산업시설 :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방송업(60), 정보서비스업(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건축법 시행령」별표1 방송통신 시설 중 데이터센터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70% 이하		
용적률	280% 이하		280% 이하		
최고층수	6층 (39m이하)	6층 (33m이하)	5층 (39m이하)	5층 (55m이하)	
해당가구	산업10	산업9	산업11, 산업12	산업13	

* 도시형공장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별표1-1>내 용도에 한정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별표1-2>내 용도에 한정
 *** 지식산업센터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 단,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미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은 불허
 **** 문화 및 집회시설은 도시형공장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부대시설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20% 이하에 한함

경 기 도 보

제7286호

2023. 7. 3. (일)

구분	산업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문화산업시설 :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방송업(60)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시설 :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80% 이하
최고층수	6층 (65m이하)
해당가구	산업14

* 도시형공장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별표1-1>내 용도에 한정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별표1-2>내 용도에 한정
 *** 지식산업센터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 단,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은 불허
 **** 문화 및 집회시설은 도시형공장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부대시설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20% 이하에 한함

【기정】

< 별표 1-1 > 도시형공장에 입주 가능한 업종

분류번호	업 종 명
26410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호

< 별표 1-2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

구 분	업 종
1.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 지식기반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중 광고물작성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중 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오디오기록매체출판업 70. 연구개발업 72.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73. 전문디자인업
3. 정보통신산업	58. 출판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66. 금융지원 서비스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8조의5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신분류코드(중분류)

【변경】

< 별표 1-1 > 도시형공장에 입주 가능한 업종 (변경없음)

분류번호	업 종 명
26410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호

< 별표1-2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변경)

구 분	업 종
1. 제조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 지식기반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중 광고물작성업 58. 출판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중 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오디오기록매체출판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서비스업 중 광고업,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73. 전문디자인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중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중 경비, 경호 및 탐정업,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3. 정보통신산업	58. 출판업 61. 우편 및 통신업 중 전기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방송통신 시설 중 데이터센터 제외 66. 금융지원 서비스업
4. 입주허용시설	68. 부동산업 -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8조의5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신분류코드(중분류)

② 복합용지(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복합1~ 복합5	복합1~ 복합5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최고 층수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6m - 벽면지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상 층은 자유롭게 설치하되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도록 하며,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녹화를 권장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담장 및 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야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복합1~ 복합4	복합1~ 복합4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최고 층수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6m - 벽면지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형태 및 외관	• 지붕 및 옥상 - 지붕 및 옥상 층은 자유롭게 설치하되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도록 하며,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녹화를 권장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담장 및 대문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야간경관 -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주차	• 「김포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

주) 기타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 별표 2 > 복합용지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변경)

【기정】

구분		복합용지	
건 축 물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문화 산업시설 :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59), 방송업(60)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물류단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 상업시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중 매매장 • 판매시설 ■ 지원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제외) •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문화 산업시설 : 정보서비스업(6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물류단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 상업시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 판매시설 ■ 지원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제외) •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8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330% 이하	
최고층수	16층 (100m이하)	5층 (55m이하)	
해당가구	복합1	복합2, 복합4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복합용지계획을 위하여 시설의 세부용도별 비율 설정
 -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산업시설면적 60%이상, 상업시설면적 30%이하, 지원시설면적 10%이하로 계획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면적합은 건축물 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문화 및 집회시설은 부수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10% 이하에 한함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별표 1-2>내 용도에 한정

*** 지식산업센터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 단,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은 불허

구분		복합용지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지식산업시설 :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건축기술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7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물류단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 상업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 판매시설 ■ 지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제외) •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문화산업시설 :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59), 방송업(60), 정보서비스업(6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물류단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 상업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 판매시설 ■ 지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제외) •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80% 이하	
용적률	330% 이하	330% 이하	
최고층수	5층 (55m이하)	5층 (55m이하)	
해당가구	복합3	복합5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복합용지계획을 위하여 시설의 세부용도별 비율 설정
 -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산업시설면적 60%이상, 상업시설면적 30%이하, 지원시설면적 10%이하로 계획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면적합은 건축물 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문화 및 집회시설은 부수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10% 이하에 한함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별표 1-2>내 용도에 한정

*** 지식산업센터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 단,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은 불허

【변경】

구분	복합용지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문화산업시설 :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방송업(60)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 상업시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중 매매장 • 판매시설 ■ 지원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제외) •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문화산업시설 : 정보서비스업(63) ※ 단, 「건축법 시행령」별표1 방송통신 시설 중 데이터센터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 상업시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 판매시설 ■ 지원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제외) •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330% 이하	330% 이하	
최고층수	10층 (55m이하)	10층 (55m이하)	
해당가구	복합1	복합2, 복합4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복합용지계획을 위하여 시설의 세부용도별 비율 설정
 -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산업시설면적 60%이상, 상업시설면적 30%이하, 지원시설면적 10%이하로 계획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면적합은 건축물 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문화 및 집회시설은 부수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10% 이하에 한함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별표 1-2>내 용도에 한정

*** 지식산업센터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 단,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은 불허

구분		복합용지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문화산업시설 : 정보서비스업(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건축법 시행령」별표1 방송통신 시설 중 데이터센터 제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지식산업시설 :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 상업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 판매시설 ■ 지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제외) •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30% 이하	
최고층수	10층 (55m이하)	
해당가구	복합3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복합용지계획을 위하여 시설의 세부용도별 비율 설정
 -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산업시설면적 60%이상, 상업시설면적 30%이하, 지원시설면적 10%이하로 계획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면적합은 건축물 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문화 및 집회시설은 부수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10% 이하에 한함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별표 1-2>내 용도에 한정

*** 지식산업센터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 단,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은 불허

③ 단독주택용지(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단독1	단독1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최고층수	• 4층 이하 (20m이하)
		주택의규모 및 세대수	• 주택규모는 <별표3-1>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2m - 벽면지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페인트의 사용을 지양하여, 재료의 물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지붕형태 및 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지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테라스나 정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노출된 옥상의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 2. 경사지붕일 경우 경사도는 1:1~1:3의 범위로 하며,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여, 인접건축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 평지붕 외곽에 경사지붕 등을 설치하거나 경사지붕 외곽에 평지붕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4. 경사지붕에는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외기, 안테나, 물탱크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 담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담장 높이는 2m를 초과할 수 없다. - 담장의 재료는 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다른 재료의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단독주택용지내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의 40% 이하에 한함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단독1	단독1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최고 층수	• 4층 이하 (20m이하)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 주택규모는 <별표3-1>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 벽면지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페인트의 사용을 지양하여, 재료의 물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형태 및 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용지의 지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테라스나 정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노출된 옥상의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 2. 평지붕 외곽에 경사지붕 등을 설치하거나 경사지붕 외곽에 평지붕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담장 높이는 1.2m를 초과할 수 없다. - 담장의 재료는 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다른 재료의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주차	• 「김포시 주차장조례」에 따른다

* 단독주택용지내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의 40% 이하에 한함
 주) 기타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④ 공동주택용지(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동1	공동1	허용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최고층수	• 25층 이하 (92m이하)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 주택규모는 <별표3-1>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동간격 및 높이 등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각 단위주거에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이 확보되도록 계획 • 풍부한 녹지공간, 양호한 조망 및 외부공간으로의 열린 시야 확보를 위해 고층탑상형 배치 권장 • 주거동과 주거동사이에는 개방감과 기류의 흐름을 위해 8m이상 확보하도록 유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면은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의 변화 권장 • 주거동의 지붕은 개성있는 경관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계획 • 옥탑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이나 돔형 등으로 하여 건물의 상징성 강조 및 도시의 변화있는 스카이라인 창출 • 계단실, 기계실 등의 옥탑층 높이는 평균 1개 층고(4m) 이하 설치를 권장 • 옥상에는 물탱크 및 기계실(엘리베이터 관련)등의 설치를 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외부노출억제가 되도록 계획 • 장애인을 위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과 해당 주차장 관련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복리시설 등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야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경 기 도 보

제7286호

2023. 7. 3. (일)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동1	공동1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0% 이하
		최고 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층 이하 (92m이하)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규모는 <별표3-1>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동간격 및 높이 등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각 단위주거에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 풍부한 녹지공간, 양호한 조망 및 외부공간으로의 열린 시야 확보를 위해 고층 탑상형 배치 권장한다. • 주거동과 주거동 사이는 개방감과 기류의 흐름을 위해 8m이상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면은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 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의 변화 권장한다. • 주거동의 지붕은 개성있는 경관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계획한다. • 옥탑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이나 돔형 등으로 하여 건물의 상징성 강조 및 도시의 변화있는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 • 계단실, 기계실 등의 옥탑층 높이는 평균 1개 층고(4m) 이하 설치를 권장한다. • 옥상에는 물탱크 및 기계실(엘리베이터 관련)등의 설치를 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외부노출억제가 되도록 계획한다. • 장애인을 위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과 해당 주차장 관련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복리시설 등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야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단, 건축심의에서 허용할 경우 변경 가능)
		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시 주차장조례」에 따른다

주) 기타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⑤ 주상복합용지(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주상1	주상1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는 <별표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주거용도와 주거외 용도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주거용도 90%이하, 주거외 용도 10%이상으로 한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450% 이하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38층 이하 (122m 이하)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규모는 <별표3-1>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강 조망권 및 통경축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하여 함. 가로변 전면부의 접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침도에서 지정된 건축지정선 또는 벽면지정선은 해당 획지의 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에 건축물의 해당 수직면이 이를 선에 접하여야 한다.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주거와 주거 외 용도가 수직적으로 복합된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거외 용도의 시설은 3층까지만 설치(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 단, 주차장, 기계실 및 전기실은 예외로 한다)를 원칙으로 하며,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계단 등을 주거외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타워형)을 권장하며, 입면적은 3,500제곱미터이하(26층 이상의 주거동의 경우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해당 건축심의에서 허용할 경우에는 3,500제곱미터 초과가능), 주거동 1개층의 호수는 6호를 초과할 수 없다. 주거동의 입면은 지상층부(1층~3층구간내), 기준층부, 최상층부(최상층1~2층구간내)로 구분하며, 각 부분 간에는 다음 중 최소 2가지 이상을 함께 적용하여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 색채 변화 - 재질 변화 - 외관의 디자인 변화 건축물 1층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담장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0.8미터 이하의 화목류의 생울타리로 하되, 간선가로변에는 설치 할 수 없다.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야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주상1	주상1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는 <별표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주거용도와 주거외 용도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주거 용도 90%이하, 주거외 용도 10%이상으로 한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450% 이하
		최고 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38층 이하 (건축물 높이 122m 이하)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규모는 <별표3-1>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강 조망권 및 통경축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하여 한다.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주거와 주거 외 용도가 수직적으로 복합된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거외 용도의 시설은 3층까지만 설치(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 단, 주차장, 기계실 및 전기실은 예외로 한다)를 원칙으로 하며,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계단 등을 주거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타워형)을 권장하며, 입면적은 3,500제곱미터이하(26층 이상의 주거동의 경우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해당 건축심의에서 허용할 경우에는 3,500제곱미터 초과가능), 주거동 1개층의 호수는 6호를 초과할 수 없다.(단, 건축심의에서 허용할 경우 초과 가능) 주거동의 입면은 지상층부, 기준층부, 최상층부로 구분하며, 각 부분 간에는 다음 중 최소 2가지 이상을 함께 적용하여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채 변화 재질 변화 외관의 디자인 변화 건축물 1층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담장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0.8미터 이하의 화목류의 생울타리로 하되, 간선가로변에는 설치 할 수 없다.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야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단, 건축심의에서 허용할 경우 변경 가능) 		
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시 주차장조례」에 따른다 		

주) 기타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경 기 도 보

제7286호

2023. 7. 3. (월)

< 별표 3 > 주상복합용지의 건축물 용도(변경없음)

구 분	주상복합용지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를 제외한 준주거지역내 허용용도 	
	3층이하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허용도를 제외한 준주거지역내 허용용도 	
	불허용도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안마원·안마시술소 • 의료시설중 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공장 </td> <td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발전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관광휴게시설 • 청소년보호법 제2조5호가목의 청소년출입·이용금지업소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안마원·안마시술소 • 의료시설중 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안마원·안마시술소 • 의료시설중 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발전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관광휴게시설 • 청소년보호법 제2조5호가목의 청소년출입·이용금지업소 		

< 별표 3-1 > 주택규모 및 세대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기정】

획지 번호	주택유형 (㎡)	획지면적 (㎡)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평균규모 (㎡)	최고층수 (층)	건폐율 (%)	허용 용적률 (%)	비고
단독1	265㎡초과	10,488	40	106	277	4	60	200	
공동1	60~85㎡미만 85㎡초과	50,925	1,100	2,904	115	25	60	230	
주상1	60~85㎡미만 85㎡초과	97,679	2,760	7,286	120	38	60	450 (주거:400)	
합 계		159,092	3,900	10,296	-	-	-	-	

【변경】

획지 번호	획지면적 (㎡)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평균 규모 (㎡)	최고층수 (층)	건폐율 (%)	허용 용적률 (%)	비고
단독1	11,550	38	250	298	4	50	200	
공동1	50,907	1,100	2,904	115	25	30	230	
주상1	76,449	2,705	7,141	120	38	50	450 (주거 : 400)	
합 계	138,906	3,843	10,295	-	-	-	-	

⑥ 상업시설용지(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상업1	상업1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는 <별표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단, 옥외 철탑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단, 극장 및 영화관에 한함)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단,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업무시설 위락시설 -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750% 이하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층 이하 (100m이하) • 1층부의 높이는 4.5미터를 권장하며, 특히 1층 벽면지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1층부의 높이를 4.5미터로 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주전면은 다음 원칙에 따라 위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 -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주전면을 면하도록 하되, 20미터 이상 도로에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 1층벽면 지정선에 면한 외벽면 - 상기 조건들이 겹치는 획지는 각 규정 모두 적용 설치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20센티미터 이상 단차가 나지 않도록 한다. • 가로변 전면부의 접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침도에서 지정된 해당 획지의 건축 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에 전면부 외벽면이 접하여야 한다.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벽면지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벽면지정선에 면한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으로 한다. 이때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여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장애인을 위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시설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해당 주차장 관련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야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상업1	상업1	권장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는 <별표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단, 옥외 철탑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단, 극장 및 영화관에 한함)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단,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업무시설 위락시설 -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750% 이하
		최고 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층 이하 (100m이하) 1층부의 높이는 4.5미터를 권장하며, 특히 1층 벽면지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1층부의 높이를 4.5미터로 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주전면은 다음 원칙에 따라 위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 -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도로에 주전면을 면하도록 하되, 20미터 이상 도로에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 1층벽면 지정선에 면한 외벽면 - 상기 조건들이 겹치는 획지는 각 규정 모두 적용 설치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20센티미터 이상 단차가 나지 않도록 한다. 가로변 전면부의 접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침도에서 지정된 해당 획지의 건축 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에 전면부 외벽면이 접하여야 한다.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벽면지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층벽면지정선에 면한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으로 한다. 이때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 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여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과 해당 주차장 관련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야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시 주차장조례」에 따른다 		

주) 기타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⑦ 업무시설용지(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업무1	업무1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는 <별표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고시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에 한함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제외)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철타이 설치된 실외골프장 제외) 일반업무시설(지상연면적의 60% 이상)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최고층수	• 20층 이하 (90m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6m - 벽면지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 및 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상 층은 자유롭게 설치하되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 이 되도록 하며,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녹화를 권장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 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담장 및 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등을 증진 시킬 수 있 도록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외벽의 재료, 형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층부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 치토록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야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업무1	업무1	권장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용도는 <별표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고시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에 한함 •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철타이 설치된 실외골프장 제외) • 일반업무시설(지상연면적의 60% 이상)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최고 층수	• 25층 이하 (90m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6m - 벽면지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상 층은 자유롭게 설치하되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도록 하며,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녹화를 권장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담장 및 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등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층부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야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주차	• 「김포시 주차장조례」에 따른다		
		주) 기타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⑧ 숙박용지(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숙박1	숙박1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는 <별표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0% 이하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층 이하 (80m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6m - 벽면지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 및 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상 층은 자유롭게 설치하되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도록 하며,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녹화를 권장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 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담장 및 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등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외벽의 재료, 형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부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야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숙박1	숙박1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는 <별표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0% 이하
		최고 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층 이하 (80m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6m - 벽면지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 및 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상 층은 자유롭게 설치하되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도록 하며,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녹화를 권장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담장 및 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등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외벽의 재료, 형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부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야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시 주차장조례」에 따른다

주) 기타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경 기 도 보

제7286호

2023. 7. 3. (월)

< 별표 4 > 상업시설·숙박용지 및 업무시설용지 용도분류표

【기정】

구 분	상업시설·숙박용지 및 업무시설용지		
	상업용지	숙박용지	업무시설용지
단독주택	X	X	X
공동주택	X	X	X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라”목중 안마원, “사”, “아”목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	●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X	X	X
판매시설	● (철타이 설치된 실외 골프연습장 제외)	● (철타이 설치된 실외 골프연습장 제외)	○ (철타이 설치된 실외 골프연습장 제외)
운수시설	○	○	X
의료시설	● (정신, 요양, 격리병원 제외)	X	● (정신, 요양,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	X	●
노유자시설	○	○	○
수련시설	X	X	X
운동시설	○	○	●
업무시설	●	● (오피스텔 제외)	●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에 한함)	○	X
위락시설	● (지형물등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된 경우 한함)	●	X
공장	X	X	X
창고시설	X	X	X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X	X	X
자동차관련시설	○ (폐차장 제외)	X	○ (폐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X	X	X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X	X	X
교정 및 군사시설	X	X	X
방송통신시설	○	X	●
발전시설	X	X	X
묘지관련시설	X	X	X
관광휴게시설	○	X	X
장례식장	X	X	X

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권장)

X:불허용도

경 기 도 보

제7286호

2023. 7. 3. (월)

【변경】

구 분	상업·숙박용지 및 업무시설용지		
	상업용지	숙박용지	업무시설용지
단독주택	X	X	X
공동주택	X	X	X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라”목중 안마원, “사”, “아”목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	●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X	X	X
판매시설	● (철탑이 설치된 실외 골프연습장 제외)	● (철탑이 설치된 실외 골프연습장 제외)	○ (철탑이 설치된 실외 골프연습장 제외)
운수시설	○	○	X
의료시설	● (정신, 요양, 격리병원 제외)	X	● (정신, 요양,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	X	●
노유자시설	○	○	○
수련시설	X	X	X
운동시설	○	○	●
업무시설	●	● (오피스텔 제외)	●
숙박시설	X	○	X
위락시설	● (지형물등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된 경우 한함)	●	X
공장	X	X	X
창고시설	X	X	X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X	X	X
자동차관련시설	○ (폐차장 제외)	X	○ (폐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X	X	X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X	X	X
교정 및 군사시설	X	X	X
방송통신시설	○ (데이터센터 제외)	X	● (데이터센터 제외)
발전시설	X	X	X
묘지관련시설	X	X	X
관광휴게시설	○	X	X
장례식장	X	X	X

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권장)
X:불허용도

⑨ 근린생활시설용지【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근린1 ~근린4	근린1 ~근린4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 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단,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단, 주택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제외) 운동시설(단,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방송통신시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최고 층수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주방향(전면)을 폭이 넓은 도로로 향하도록 배치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 및 옥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상 층은 자유롭게 설치하되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도록 하며,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녹화를 권장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외벽의 재료, 형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야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주차장	• 「김포시 주차장조례」에 따른다

주) 기타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⑩ 유치원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유치원1	유치원1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연구시설 - 학교 중 유치원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최고 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층 이하 (20m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이 집적되는 공간의 쾌적성 증진과 교사 및 학생이용의 편리성을 위해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높은 도로 또는 공원·녹지를 향하도록 권장한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 및 옥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상 층은 자유롭게 설치하되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도록 하며,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녹화를 권장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외벽의 재료, 형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야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⑪ 학교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학교1	학교1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연구시설 - 학교 중 초등학교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최고 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하 (20m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이 집적되는 공간의 쾌적성 증진과 교사 및 학생이용의 편리성을 위해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높은 도로 또는 공원·녹지를 향하도록 권장한다. 학교시설의 교사동은 부지여건 및 일조를 감안하여 배치하고 운동장이 시설용지의 남쪽에 배치되도록 권장한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 및 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상 층은 자유롭게 설치하되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도록 하며,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녹화를 권장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외벽의 재료, 형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 - 담장은 체육시간에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한다.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야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경 기 도 보

제7286호

2023. 7. 3. (일)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학교2	학교2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연구시설 - 학교 중 중학교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 이하
		최고 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 이하 (20m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이 집적되는 공간의 쾌적성 증진과 교사 및 학생이용의 편리성을 위해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높은 도로 또는 공원·녹지를 향하도록 권장한다. • 학교시설의 교사동은 부지여건 및 일조를 감안하여 배치하고 운동장이 시설용지의 남쪽에 배치되도록 권장한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상 층은 자유롭게 설치하되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도록 하며,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녹화를 권장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 담장은 체육시간에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한다. •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야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⑫ 종교용지(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종교1	종교1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노유자시설(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에 한함)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최고 층수	• 4층 이하 (20m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벽면지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의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 옥상에 설치되는 조명시설은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눈부심이 없는 간접조명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야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종교1, 2	종교1, 2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노유자시설(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에 한함)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최고 층수	• 4층 이하 (20m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의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 옥상에 설치되는 조명시설은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눈부심이 없는 간접 조명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야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주차	• 「김포시 주차장조례」에 따른다

주) 기타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⑬ 공공청사용지【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청1	공청1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방서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최고 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및 주차출입구 등 옥외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한다.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 및 옥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의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옥상에 설치되는 조명시설은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눈부심이나 간접조명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외벽의 재료, 형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보행자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은 보행자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시 주차장조례」에 따른다

주) 기타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⑭ 사회복지시설용지【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사복1	사복1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에 따른 문화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 노유자시설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최고 층수	•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및 주차출입구 등 옥외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한다.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의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 옥상에 설치되는 조명시설은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눈부심 없는 간접조명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 보행자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은 보행자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주차	• 「김포시 주차장조례」에 따른다		

주) 기타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⑮ 변전소(에너지공급설비)용지【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전1	전1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법」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 이하
		최고 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층 이하 (13m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⑩ 기타시설용지(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위1	위1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와 그 부대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13호에 한함)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최고층수	• 3층 이하 (13m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오1	오1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하수도 중 오수중계펌프장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최고층수	• 3층 이하 (13m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주1, 주2, 주4, 주5	주1, 주2, 주4, 주5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후면도로나 부출입구변에 설치하여야 한다.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최고층수	• 5층 이하 (18m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붕 및 옥상층은 자유롭게 설치하되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도록 하며,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0.8미터 높이의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경 기 도 보

제7286호

2023. 7. 3. (월)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주3	주3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후면도로나 부출입구변에 설치하여야 한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최고층수	• 5층 이하 (18m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상층은 자유롭게 설치하되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도록 하며,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0.8미터 높이의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유1	유1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수지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최고층수	• 3층 이하 (13m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6m - 벽면지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경 기 도 보

제7286호

2023. 7. 3. (일)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위1	위1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와 그 부대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13호에 한함)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이하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층 이하 (13m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위2	위2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되는 수소충전소와 그 부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 중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이하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층 이하(13m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오1	오1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하수도 중 오수중계펌프장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이하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층 이하 (13m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경 기 도 보

제7286호

2023. 7. 3. (일)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주1~ 주7	주1~ 주7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후면도로나 부출입구변에 설치하여야 한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12조의2에 따라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1, 2(일반공업지역) 80% 이하 - 주차장3·4(준주거지역), 5(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주차장6, 7은 지하주차장 계획으로 건폐율 기준 적용 제외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12조의2에 따라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1, 2(일반공업지역) 350% 이하 - 주차장3·4(준주거지역) 500% 이하 - 주차장5(제1종일반주거지역) 300% 이하 ※ 주차장6, 7은 지하주차장 계획으로 건폐율 기준 적용 제외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 이하 (18m이하) - 단, 「주차장법」 제12조의2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상 층은 자유롭게 설치하되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도록 하며,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0.8미터 높이의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유1	유1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수지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이하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층 이하 (13m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6m - 벽면지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4) 기타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 대지내 공지, 대지내 차량출입, 주차장설치 등의 적용기준은 산업단지계획 수립시 승인된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한다.
- 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용도별 세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① 산업시설·복합용지·변전소(에너지공급설비)·용지(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1~ 산업11, 복합1~ 복합5	산업1~ 산업11, 복합1~ 복합5	대지내 공 지	• 대지내 공지 조성은 <별표5>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지내 차량 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주차장 설치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김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1~ 산업14, 복합1~ 복합4 전1	산업1~ 산업14, 복합1~ 복합4 전1	대지내 공 지	• 대지내 공지 조성은 <별표5>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지내 차량 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주차장 설치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김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상업·업무·숙박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상업1, 업무1, 숙박1	상업1, 업무1, 숙박1	대지내 공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공지 조성은 <별표5>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횡단구배는 최소 1.5%, 최고 5%로 하며, 2%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 등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대지내 차량 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주차장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김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경 기 도 보

제7286호

2023. 7. 3. (월)

③ 단독주택·공동주택·주상복합·근린생활시설·유치원·학교·종교용지·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단독1, 공동1, 주상1, 유치원1, 학교1~2, 종교1	단독1, 공동1, 주상1, 유치원1, 학교1~2, 종교1	대지내 공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공지 조성은 <별표5>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횡단구배는 최소 1.5%, 최고 5%로 하며, 2%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대지내 차량 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주차장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김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단독1, 공동1, 주상1, 근린1~4, 유치원1, 학교1~2, 종교1~2, 공청1, 사복1	단독1, 공동1, 주상1, 근린1~4, 유치원1, 학교1~2, 종교1~2, 공청1, 사복1	대지내 공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공지 조성은 <별표5>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횡단구배는 최소 1.5%, 최고 5%로 하며, 2%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대지내 차량 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주차장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김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기타시설용지(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위1, 오1, 주1~5, 유1	위1, 오1, 주1~5, 유1	대지내 공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내 공지 조성은 <별표5>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지내 차량 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주차장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김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위1, 위2, 오1, 주1~7, 유1	위1, 위2, 오1, 주1~7, 유1	대지내 공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내 공지 조성은 <별표5>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지내 차량 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주차장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김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별표 5 > 대지내 공지 설치기준(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 연결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결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계부 처리 : 전면공지의 경계부 처리 • 전면공지는 연결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 보도 연결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 : 보도 연결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우며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공개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김포시 건축 조례 38조에 의해 조성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상위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 교차로 각각부(2개이상의 교차로 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각각부에 배치) •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쪽 부분 •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쪽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또는 건너편 공개공지와 연계되게 배치하여야 한다. - 1개소로 집중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이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조성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며,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면적의 최소 폭은 5m 이상 이어야 하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 전체면적의 4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녹지로 조성하여야 한다. • 녹지의 외곽은 높이 35cm ~ 50cm의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물로 조성하고, 구조물의 상단은 너비가 25cm 이상으로 사람이 걸터앉기에 불편함이 없는 마감 재료로 하여야 한다. • 녹지조성 시 녹지지역은 수관투영면적의 합이 녹지 총면적의 20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때 교목의 수관투영면적은 녹지 총면적의 1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녹지에 도입할 수목은 김포지역 자생가능 수종을 원칙으로 하되, 이식과 관리가 용이하고 경관미를 고려하여 선정·식재하여야 한다. • 녹지의 지표면은 피복되게 지피식물을 식재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에는 휴식시설과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시설물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내에는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이하 “설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리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별표 6 > 색채에 관한 사항(변경)

【기정】

구 분	계획 내용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시만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대표경관색을 추출하고 이를 색채계획에 적용하여 도시 이미지 확립 - 주변 경관자원과 조화되도록 체계적인 도시색채 관리기준을 제시하여 통합적 도시색채경관 형성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용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의 주변 환경(녹지, 수변)을 고려하고, 그와 어울릴 수 있는 조화로운 색채계획이 필요 - 단독주택의 경우, 다양성은 인정하되 같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을 시 주택의 지붕, 외관 등의 색채에 통일감을 부여하도록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브랜드의 색상을 강조하기보다는 주변과 조화를 우선시하도록 유도 • 상업·업무용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과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요소(옥외광고물, 건축물외관 등)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의 균형 있는 색채 배색에 중점을 둔 계획이 필요 - 도시의 공간적 연속성 확보를 위해 주요 가로 축을 고려한 색채계획과 주변에 위치한 지역들과의 조화되도록 하는 색채계획이 필요 • 공장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을 저해하는 색채(고채도의 색채)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녹지와 조화되는 색채 사용을 권장하도록 색채계획이 이루어져야 함 • 공공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공건축물은 사용자들이 부담 없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색채의 사용이 요구됨

【변경】	
구 분	계획 내용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향 - 새롭게 형성되는 신도시 경관으로 토지이용에 따른 색채계획 수립 - 주변 경관자원과 조화되도록 색채범위를 설정하여 통합적인 도시색채경관 형성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건축물 - 중명도, 중채도의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여 세련되고 차분한 분위기 조성 - 경직된 단조로운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2가지 재질을 활용한 배색 적용 - 강조색은 생동감을 부여할 수 있는 색을 다채롭게 사용 • 상업·업무·복합건축물 - 주거지와 차별화 되나, 전체 지구와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 중명도, 중채도의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여 세련되고 차분한 분위기 조성 - 주조색과 보조색으로 생동감을 부여할 수 있는 색을 다채롭게 사용 •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 주거를 위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부드럽고 차분한 색채 사용 - 저층부와 중층부 이상으로 구분하여 보행자 접근과 시점을 고려한 색채계획 - 경쾌하고 산뜻한 주거지 색채경관 연출 • 공공 건축물 및 종교건축물 - 주조색과 보조색은 생동감을 부여할 수 있는 색을 다채롭게 사용하되 고채도 사용 지양 - 자연소재 사용 및 재료 고유의 색채적용 권장 - 중명도, 중채도 위주로 자연색 또는 2차색 이상 혼합색 사용 •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편안하고 친근한 주거환경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색채 적용 - 중명도, 중채도 위주로 자연색 또는 2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 - 다양성은 인정하되, 같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을 시 주택의 지붕, 외관 등의 색채에 통일감 부여

주)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을 따른다.

< 별표 7 > 가로시설물 설치기준(변경)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이미지의 개념을 구상화하기 위한 디자인 모티브 - 김포시만의 환경적 특징을 고려하여 디자인 모티브를 추출함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이미지의 개념을 구상화하기 위한 디자인 모티브 - 김포시만의 환경적 특징을 고려하여 디자인 모티브를 추출함

주)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을 따른다.

< 별표 8 >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 차등화 • 업소당 간판 총 수량 최소화 • 인접 간판, 거리, 건물 등 주변 환경과 조화 • 시인성과 가독성을 위한 충분한 여백 확보 • 극적인 조명을 지양하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조명 연출 권장 •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표기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소당 간판 총 수량 최소화 • 인접 간판, 거리, 건물 등 주변 환경과 조화 • 시인성과 가독성을 위한 충분한 여백 확보 • 극적인 조명을 지양하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조명 연출 권장 •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표기

주)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을 따른다.

< 별표 9 >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변경)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를 구성하는 건축의 형태별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사업시설로 구분, 차별적 조명 연출 유도방안 수립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를 구성하는 건축의 형태별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사업시설로 구분 차별적 조명연출 유도방안 수립

주)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을 따른다.

경 기 도 보

제7286호

2023. 7. 3. (월)

5)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신설】

○ 대지내 전체 계획생태면적률은 22.3%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용지별로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2016.7, 환경부」상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생태면적률 15%이상 확보해야함

구 분	면적(㎡)	구성비 (%)	적용면적 (㎡)	가중치	생태면적 (㎡)	비고
합 계	1,116,570	100.0	-	-	249,099.19	-
산업시설용지	417,554	37.4	-	-	-	-
산업시설	284,858	25.5	-	-	-	-
복합시설1	53,619	4.8	8,042.85	1.0	8,042.85	조경면적 15%
복합시설2	25,221	2.3	3,783.15	1.0	3,783.15	조경면적 15%
복합시설3	18,782	1.7	2,817.30	1.0	2,817.30	조경면적 15%
복합시설4	32,606	2.9	4,890.90	1.0	4,890.90	조경면적 15%
변전소(에너지공급설비)	2,468	0.2	-	-	-	-
주거시설용지	156,095	14.0	23,414.25	1.0	23,414.25	조경면적 15%
지원시설용지	38,659	3.5	5,798.85	1.0	5,798.85	조경면적 15%
상업시설용지	56,349	5.0	8,452.35	1.0	8,452.35	조경면적 15%
공공시설용지	447,913	40.1	173,184.70	-	165,083.54	-
도 로	211,506	18.9	10,358.15	1.0	10,358.15	식수대
			10,358.15	0.3	3,107.45	자전거도로 (투수포장)
			2,003.00	0.3	600.90	보행자도로 (투수포장)
주차장	7,361	0.7	-	-	-	-
학 교	33,034	3.0	4,995.10	1.0	4,955.10	조경면적 15%
오수중계펌프장	901	0.1	-	-	-	-
유수지	31,256	2.8	27,367.64	1.0	27,367.64	자연지반녹지
광 장	11,322	1.0	-	-	-	-
공 원	52,496	4.7	52,496.00	1.0	52,496.00	자연지반녹지
녹 지	91,775	8.2	91,775.00	1.0	91,775.00	자연지반녹지
사회복지시설	6,610	0.6	991.50	1.0	991.50	조경면적 15%
공공청사(소방서)	1,652	0.1	247.80	1.0	247.80	조경면적 15%

▣ 생태면적률(%) 산정결과 : 249,099.19㎡ / 1,116,570㎡ x 100% = 22.3%

경 기 도 보

제7286호

2023. 7. 3. (일)

다. 업종별 배치계획(변경)

1) 세부 배치계획(변경)

【기정】

구 분	계		'21. 01월 현재		향후계획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소계	38	432,923	-	-	38	432,923	
입주 현황	58. 출판업	5	14,478	-	-	5	14,478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11	189,966	-	-	11	189,966
	61. 통신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	13,784			1	13,784
	63. 정보서비스업	19	168,831	-	-	19	168,831
	70. 연구개발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1	17,683	-	-	1	17,683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3. 정보서비스업	1	28,181	-	-	1	28,181

주1) 입주업체수는 산업단지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의 획지계획에 따르며, 업체수는 1필지에 1개 업체로 산정하였음

경 기 도 보

제7286호

2023. 7. 3. (일)

【변경】						
구 분	업체수			면적(㎡)		
	계	23.05월 현재	향후 계획	계	23.05월 현재	향후 계획
소계	55	-	55	415,086	-	415,086
58. 출판업	-	-	-	-	-	-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	-	1	53,619	-	53,619
60. 방송업	-	-	-	-	-	-
61. 통신업	-	-	-	-	-	-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	-	-	-	-
63. 정보서비스업	4	-	4	84,908	-	84,908
70. 연구개발업	-	-	-	-	-	-
71. 전문서비스업	-	-	-	-	-	-
72.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 기술서비스업	-	-	-	-	-	-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8	-	8	169,335	-	169,335
60. 방송업	-	-	-	-	-	-
63. 정보서비스업	-	-	-	-	-	-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	-	1	12,665	-	12,665
60. 방송업	-	-	-	-	-	-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	-	-	-	-
58. 출판업	4	-	4	11,406	-	11,406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	-	-	-
61. 통신업	-	-	-	-	-	-
63. 정보서비스업	-	-	-	-	-	-
58. 출판업	9	-	9	37,486	-	37,486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	-	-	-
63. 정보서비스업	-	-	-	-	-	-
63. 정보서비스업	1	-	1	18,782	-	18,782
70. 연구개발업	-	-	-	-	-	-
71. 전문서비스업	-	-	-	-	-	-
72.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 기술서비스업	-	-	-	-	-	-
58. 출판업	23	-	23	23,023	-	23,023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	-	-	-
60. 방송업	-	-	-	-	-	-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	-	-	-	-
61. 통신업	4	-	4	3,862	-	3,862
63. 정보서비스업	-	-	-	-	-	-
70. 연구개발업	-	-	-	-	-	-
71. 전문서비스업	-	-	-	-	-	-
72.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 기술서비스업	-	-	-	-	-	-

주1) 입주업체수는 산업단지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의 획지계획에 따르며, 업체수는 1필지에 1개 업체로 산정하였음

주2) 산업시설용지 내 변전소(에너지공급설비)(2,468㎡)는 해당 기능 유치를 위해 업종배치계획에서 제외

주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중 태양력 발전업(35114)에 한하여, 건축물 지붕 또는 옥상에만 설치 가능

2) 배치기준(변경없음)

- 유치업종 및 시설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업종별 유치규모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검토, 효율적인 업종별 배치
 - 입주대상기업이 지역발전 및 산업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 등과 입주협약 등을 통해 유치되는 경우, 업종배치와 달리 배치 가능함
 - 위의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형상 등 현실적인 여건 또는 지역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
-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또는 유사업종별로 배치하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의 규정에 의거 배치함

라. 입주관리계획(변경)

1) 입주(임대 포함) 대상업종(변경)

- 산업단지계획상 입주 대상업종(변경없음)

< 입주대상업종 >

구분	입주대상업종		
입주대상업종	I.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출판업	(5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
		방송업	(60)
		통신업	(61)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70)
		전문서비스업	(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72)

- 산업단지관리계획상 입주 대상업종(변경)

【기정】

구 분	입주업종	비고
입주대상 업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2)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대상 업종의 유치/공급을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여 산업단지 개발 사업 활성화

【변경】

구 분	입주업종	비고
입주대상 업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2)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대상 업종의 유치/공급을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여 산업단지 개발 사업 활성화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 중 태양력발전업(35114)에 한함	산업단지내 건축물(지붕 및 옥상)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함

2) 불허업종(입주제한업종)(변경)																																				
【기정】																																				
구 분	업종																																			
불허업종 (입주제한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상 각 용지별로 정하고 있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입주업체의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현 단계에서 각 업체별 생산공정, 공종별 대기오염물질 발생공정, 저감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추후 개별업체의 입주전 해당 법률 등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여 판단하고,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함은 물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 • 사업지구 내 입주업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물질 발생이 많은 공정 포함업체는 가능한 우선 배제토록 할 계획이며, 입주가 불가피할 경우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인근 지역에 미치는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배치 대상엿 제외한다(기입주 계약된 업체에도 동 배출기준 적용함)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																																			
	<table border="0"> <tr><td>1. 카드뮴 및 그 화합물</td><td>19. 이황화메틸</td></tr> <tr><td>2. 시안화수소</td><td>20. 아닐린</td></tr> <tr><td>3. 납 및 그 화합물</td><td>21. 클로로포름</td></tr> <tr><td>4. 폴리염화비페닐</td><td>22. 폼알데하이드</td></tr> <tr><td>5. 크롬 및 그 화합물</td><td>23. 아세트알데하이드</td></tr> <tr><td>6. 비소 및 그 화합물</td><td>24. 벤지딘</td></tr> <tr><td>7. 수은 및 그 화합물</td><td>25. 1,3-부타디엔</td></tr> <tr><td>8. 프로필렌 옥사이드</td><td>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td></tr> <tr><td>9. 염소 및 염화수소</td><td>27. 에틸렌옥사이드</td></tr> <tr><td>10. 불소화물</td><td>28. 디클로로메탄</td></tr> <tr><td>11. 석 먼</td><td>29. 스틸렌</td></tr> <tr><td>12. 니켈 및 그 화합물</td><td>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td></tr> <tr><td>13. 염화비닐</td><td>31. 1,2-디클로로에탄</td></tr> <tr><td>14. 다이옥신</td><td>32. 에틸벤젠</td></tr> <tr><td>15. 페놀 및 그 화합물</td><td>33. 트리클로로에틸렌</td></tr> <tr><td>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td><td>34. 아크릴로니트릴</td></tr> <tr><td>17. 벤젠</td><td>35. 히드라진</td></tr> <tr><td>18. 사염화탄소</td><td></td></tr> </table>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9. 이황화메틸	2. 시안화수소	20. 아닐린	3. 납 및 그 화합물	21. 클로로포름	4. 폴리염화비페닐	22. 폼알데하이드	5. 크롬 및 그 화합물	23. 아세트알데하이드	6. 비소 및 그 화합물	24. 벤지딘	7. 수은 및 그 화합물	25. 1,3-부타디엔	8. 프로필렌 옥사이드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9. 염소 및 염화수소	27. 에틸렌옥사이드	10. 불소화물	28. 디클로로메탄	11. 석 먼	29. 스틸렌	12. 니켈 및 그 화합물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3. 염화비닐	31. 1,2-디클로로에탄	14. 다이옥신	32. 에틸벤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33. 트리클로로에틸렌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34. 아크릴로니트릴	17. 벤젠	35. 히드라진	18. 사염화탄소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9. 이황화메틸																																			
2. 시안화수소	20. 아닐린																																			
3. 납 및 그 화합물	21. 클로로포름																																			
4. 폴리염화비페닐	22. 폼알데하이드																																			
5. 크롬 및 그 화합물	23. 아세트알데하이드																																			
6. 비소 및 그 화합물	24. 벤지딘																																			
7. 수은 및 그 화합물	25. 1,3-부타디엔																																			
8. 프로필렌 옥사이드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9. 염소 및 염화수소	27. 에틸렌옥사이드																																			
10. 불소화물	28. 디클로로메탄																																			
11. 석 먼	29. 스틸렌																																			
12. 니켈 및 그 화합물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3. 염화비닐	31. 1,2-디클로로에탄																																			
14. 다이옥신	32. 에틸벤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33. 트리클로로에틸렌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34. 아크릴로니트릴																																			
17. 벤젠	35. 히드라진																																			
18. 사염화탄소																																				
2)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의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																																				
<table border="0"> <tr><td>1. 구리와 그 화합물</td><td>17. 1, 1-디클로로에틸렌</td></tr> <tr><td>2. 납과 그 화합물</td><td>18. 1, 2-디클로로에탄</td></tr> <tr><td>3. 비소와 그 화합물</td><td>19. 클로로포름</td></tr> <tr><td>4. 수은과 그 화합물</td><td>20. 1,4-다이옥산</td></tr> <tr><td>5. 시안화합물</td><td>2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td></tr> <tr><td>6. 유기인 화합물</td><td>22. 염화비닐</td></tr> <tr><td>7. 6가크롬 화합물</td><td>23. 아크릴로니트릴</td></tr> <tr><td>8. 카드뮴과 그 화합물</td><td>24. 브로모포름</td></tr> <tr><td>9. 테트라클로로에틸렌</td><td>25. 아크릴아미드</td></tr> <tr><td>10. 트라이클로로에틸렌</td><td>26. 니프탈렌</td></tr> <tr><td>11. 페놀류</td><td>27. 폼알데하이드</td></tr> <tr><td>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td><td>28. 에피클로로하이드린</td></tr> <tr><td>13. 셀레늄과 그 화합물</td><td></td></tr> <tr><td>14. 벤젠</td><td></td></tr> <tr><td>15. 사염화탄소</td><td></td></tr> <tr><td>16. 디클로로메탄</td><td></td></tr> </table>	1. 구리와 그 화합물	17. 1, 1-디클로로에틸렌	2. 납과 그 화합물	18. 1, 2-디클로로에탄	3. 비소와 그 화합물	19. 클로로포름	4. 수은과 그 화합물	20. 1,4-다이옥산	5. 시안화합물	2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6. 유기인 화합물	22. 염화비닐	7. 6가크롬 화합물	23. 아크릴로니트릴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24. 브로모포름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5. 아크릴아미드	10. 트라이클로로에틸렌	26. 니프탈렌	11. 페놀류	27. 폼알데하이드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28. 에피클로로하이드린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벤젠		15. 사염화탄소		16. 디클로로메탄					
1. 구리와 그 화합물	17. 1, 1-디클로로에틸렌																																			
2. 납과 그 화합물	18. 1, 2-디클로로에탄																																			
3. 비소와 그 화합물	19. 클로로포름																																			
4. 수은과 그 화합물	20. 1,4-다이옥산																																			
5. 시안화합물	2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6. 유기인 화합물	22. 염화비닐																																			
7. 6가크롬 화합물	23. 아크릴로니트릴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24. 브로모포름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5. 아크릴아미드																																			
10. 트라이클로로에틸렌	26. 니프탈렌																																			
11. 페놀류	27. 폼알데하이드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28. 에피클로로하이드린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벤젠																																				
15. 사염화탄소																																				
16. 디클로로메탄																																				

※ 입주대상업종은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에 입주하는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대상 업종이 계획되어 있음

구 분	업종																																																																																																																												
불허업종 (입주제한 업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도시·군계획시설로 분류되는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 data-bbox="440 465 1361 504">도시·군계획시설</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40 504 726 577">교통시설 (11개)</td> <td data-bbox="726 504 1361 577">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td> </tr> <tr> <td data-bbox="440 577 726 611">공간시설 (5개)</td> <td data-bbox="726 577 1361 611">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td> </tr> <tr> <td data-bbox="440 611 726 685">유통·공급시설 (9개)</td> <td data-bbox="726 611 1361 685">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통저장 및 송유설비</td> </tr> <tr> <td data-bbox="440 685 726 759">공공·문화체육시설 (10개)</td> <td data-bbox="726 685 1361 759">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td> </tr> <tr> <td data-bbox="440 759 726 833">방재시설 (8개)</td> <td data-bbox="726 759 1361 833">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td> </tr> <tr> <td data-bbox="440 833 726 907">보건위생시설 (7개)</td> <td data-bbox="726 833 1361 907">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도축장,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td> </tr> <tr> <td data-bbox="440 907 726 940">환경기초시설 (4개)</td> <td data-bbox="726 907 1361 940">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td> </tr> </tbody> </table>	도시·군계획시설		교통시설 (11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5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9개)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통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10개)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8개)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7개)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도축장,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4개)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도시·군계획시설																																																																																																																												
	교통시설 (11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5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9개)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통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10개)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8개)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7개)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도축장,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4개)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의거 사고대비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40 974 478 1008">번호</th> <th data-bbox="478 974 774 1008">사고대비물질명</th> <th data-bbox="774 974 901 1008">CAS 번호</th> <th data-bbox="901 974 1361 1008">적용범위</th> </tr> </thead> <tbody> <tr><td>1</td><td>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td><td>000050-00-0</td><td>포름알데하이드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td></tr> <tr><td>2</td><td>메틸 하이드라진(Methyl hydrazine)</td><td>000060-34-4</td><td>메틸 하이드라진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td></tr> <tr><td>3</td><td>포름산(Formic acid)</td><td>000064-18-6</td><td>포름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td></tr> <tr><td>4</td><td>메탄올(Methanol)</td><td>000067-56-1</td><td>메탄올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td></tr> <tr><td>5</td><td>벤젠(Benzene)</td><td>000071-43-2</td><td>벤젠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td></tr> <tr><td>6</td><td>염화메틸(Methyl chloride)</td><td>000074-87-3</td><td>염화메틸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td></tr> <tr><td>7</td><td>메틸아민(Methylamine)</td><td>000074-89-5</td><td>메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td></tr> <tr><td>8</td><td>시아니드수소(Hydrogen cyanide)</td><td>000074-90-8</td><td>시아니드수소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td></tr> <tr><td>9</td><td>염화비닐(Vinyl chloride)</td><td>000075-01-4</td><td>염화비닐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td></tr> <tr><td>10</td><td>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td><td>000075-15-0</td><td>이황화탄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td></tr> <tr><td>11</td><td>산화에틸렌(Ethylene oxide)</td><td>000075-21-8</td><td>산화에틸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td></tr> <tr><td>12</td><td>포스겐(Phosgene)</td><td>000075-44-5</td><td>포스겐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td></tr> <tr><td>13</td><td>트리메틸아민(Trimethylamine)</td><td>000075-50-3</td><td>트리메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td></tr> <tr><td>14</td><td>산화프로필렌(Propylene oxide)</td><td>000075-56-9</td><td>산화프로필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td></tr> <tr><td>15</td><td>메틸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td><td>000078-93-3</td><td>메틸에틸케톤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td></tr> <tr><td>16</td><td>메틸 비닐 케톤(Methyl vinyl ketone)</td><td>000078-94-4</td><td>메틸 비닐 케톤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td></tr> <tr><td>17</td><td>아크릴산(Acrylic acid)</td><td>000079-10-7</td><td>아크릴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td></tr> <tr><td>18</td><td>메틸 아크릴레이트(Methyl acrylate)</td><td>000096-33-3</td><td>메틸 아크릴레이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td></tr> <tr><td>19</td><td>니트로벤젠(Nitrobenzene)</td><td>000098-95-3</td><td>니트로벤젠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td></tr> <tr><td>20</td><td>파라-니트로톨루엔(p-Nitrotoluene)</td><td>000099-99-0</td><td>파라-니트로톨루엔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td></tr> <tr><td>21</td><td>염화 벤질(Benzyl chloride)</td><td>000100-44-7</td><td>염화 벤질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td></tr> <tr><td>22</td><td>아크롤레인(Acrolein)</td><td>000107-02-8</td><td>아크롤레인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td></tr> <tr><td>23</td><td>알릴 클로라이드(Allyl chloride)</td><td>000107-05-1</td><td>알릴 클로라이드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td></tr> <tr><td>24</td><td>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td><td>000107-13-1</td><td>아크릴로니트릴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td></tr> <tr><td>25</td><td>에틸렌디아민(Ethylenediamine)</td><td>000107-15-3</td><td>에틸렌디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td></tr> <tr><td>26</td><td>알릴알코올(Allyl alcohol)</td><td>000107-18-6</td><td>알릴알코올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td></tr> <tr><td>27</td><td>메타-크레졸(m-Cresol)</td><td>000108-39-4</td><td>메타-크레졸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td></tr> <tr><td>28</td><td>톨루엔(Toluene)</td><td>000108-88-3</td><td>톨루엔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td></tr> <tr><td>29</td><td>페놀(Phenol)</td><td>000108-95-2</td><td>페놀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td></tr> <tr><td>30</td><td>노말-부틸아민(n-Butylamine)</td><td>000109-73-9</td><td>노말-부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td></tr> </tbody> </table>	번호	사고대비물질명	CAS 번호	적용범위	1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	000050-00-0	포름알데하이드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	메틸 하이드라진(Methyl hydrazine)	000060-34-4	메틸 하이드라진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	포름산(Formic acid)	000064-18-6	포름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	메탄올(Methanol)	000067-56-1	메탄올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	벤젠(Benzene)	000071-43-2	벤젠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	염화메틸(Methyl chloride)	000074-87-3	염화메틸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	메틸아민(Methylamine)	000074-89-5	메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8	시아니드수소(Hydrogen cyanide)	000074-90-8	시아니드수소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9	염화비닐(Vinyl chloride)	000075-01-4	염화비닐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0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000075-15-0	이황화탄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1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000075-21-8	산화에틸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2	포스겐(Phosgene)	000075-44-5	포스겐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3	트리메틸아민(Trimethylamine)	000075-50-3	트리메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4	산화프로필렌(Propylene oxide)	000075-56-9	산화프로필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	메틸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	000078-93-3	메틸에틸케톤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6	메틸 비닐 케톤(Methyl vinyl ketone)	000078-94-4	메틸 비닐 케톤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7	아크릴산(Acrylic acid)	000079-10-7	아크릴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8	메틸 아크릴레이트(Methyl acrylate)	000096-33-3	메틸 아크릴레이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9	니트로벤젠(Nitrobenzene)	000098-95-3	니트로벤젠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0	파라-니트로톨루엔(p-Nitrotoluene)	000099-99-0	파라-니트로톨루엔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1	염화 벤질(Benzyl chloride)	000100-44-7	염화 벤질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2	아크롤레인(Acrolein)	000107-02-8	아크롤레인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3	알릴 클로라이드(Allyl chloride)	000107-05-1	알릴 클로라이드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4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000107-13-1	아크릴로니트릴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5	에틸렌디아민(Ethylenediamine)	000107-15-3	에틸렌디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6	알릴알코올(Allyl alcohol)	000107-18-6	알릴알코올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7	메타-크레졸(m-Cresol)	000108-39-4	메타-크레졸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8	톨루엔(Toluene)	000108-88-3	톨루엔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9	페놀(Phenol)	000108-95-2	페놀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0	노말-부틸아민(n-Butylamine)	000109-73-9	노말-부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번호	사고대비물질명	CAS 번호	적용범위																																																																																																																									
	1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	000050-00-0	포름알데하이드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	메틸 하이드라진(Methyl hydrazine)	000060-34-4	메틸 하이드라진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	포름산(Formic acid)	000064-18-6	포름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	메탄올(Methanol)	000067-56-1	메탄올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	벤젠(Benzene)	000071-43-2	벤젠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	염화메틸(Methyl chloride)	000074-87-3	염화메틸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	메틸아민(Methylamine)	000074-89-5	메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8	시아니드수소(Hydrogen cyanide)	000074-90-8	시아니드수소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9	염화비닐(Vinyl chloride)	000075-01-4	염화비닐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0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000075-15-0	이황화탄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1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000075-21-8	산화에틸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2	포스겐(Phosgene)	000075-44-5	포스겐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3	트리메틸아민(Trimethylamine)	000075-50-3	트리메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4	산화프로필렌(Propylene oxide)	000075-56-9	산화프로필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	메틸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	000078-93-3	메틸에틸케톤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6	메틸 비닐 케톤(Methyl vinyl ketone)	000078-94-4	메틸 비닐 케톤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7	아크릴산(Acrylic acid)	000079-10-7	아크릴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8	메틸 아크릴레이트(Methyl acrylate)	000096-33-3	메틸 아크릴레이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9	니트로벤젠(Nitrobenzene)	000098-95-3	니트로벤젠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0	파라-니트로톨루엔(p-Nitrotoluene)	000099-99-0	파라-니트로톨루엔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1	염화 벤질(Benzyl chloride)	000100-44-7	염화 벤질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2	아크롤레인(Acrolein)	000107-02-8	아크롤레인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3	알릴 클로라이드(Allyl chloride)	000107-05-1	알릴 클로라이드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4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000107-13-1	아크릴로니트릴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5	에틸렌디아민(Ethylenediamine)	000107-15-3	에틸렌디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6	알릴알코올(Allyl alcohol)	000107-18-6	알릴알코올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7	메타-크레졸(m-Cresol)	000108-39-4	메타-크레졸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8	톨루엔(Toluene)	000108-88-3	톨루엔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9	페놀(Phenol)	000108-95-2	페놀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0	노말-부틸아민(n-Butylamine)	000109-73-9	노말-부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구 분	업종			
불허업종 (입주제한 업종)	31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000121-44-8 트리에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2	아세트산에틸(Ethyl acetate)	000141-78-6 아세트산에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3	시아나이드(Sodium cyanide)	000143-33-9 시안화나트륨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황혈염(Potassium ferrocyanide)·적혈염(Potassium ferri-cyanide)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질은 제외한다.	
	34	에틸렌이민(Ethylenimine)	000151-56-4 에틸렌이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5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TDI))	000584-84-9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6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000630-08-0 일산화탄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7	아크릴일 클로라이드(Acrylyl chloride)	000814-68-6 아크릴일 클로라이드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8	인화 아연(Zinc phosphide)	001314-84-7 인화 아연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9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Methyl ethyl ketone peroxide)	001338-23-4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0	디이소시아산 이소포론(Isophorone diisocyanate)	004098-71-9 디이소시아산 이소포론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1	나트륨(Sodium)	007440-23-5 나트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2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007647-01-0 염화수소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3	플루오르화수소(Hydrogen fluoride)	007664-39-3 플루오르화수소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4	암모니아(Ammonia)	007664-41-7 암모니아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5	황산(Sulfuric acid)	007664-93-9 황산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6	질산(Nitric acid)	007697-37-2 질산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7	삼염화인(Phosphorus trichloride)	007719-12-2 삼염화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8	플루오린(Fluorine)	007782-41-4 플루오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9	염소(Chlorine)	007782-50-5 염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0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007783-06-4 황화수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1	아르신(Arsine)	007784-42-1 아르신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2	클로로술폰산(Chlorosulfonic acid)	007790-94-5 클로로술폰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3	포스핀(Phosphine)	007803-51-2 포스핀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4	옥시염화인(Phosphorus oxychloride)	010025-87-3 옥시염화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5	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	010049-04-4 이산화염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6	디보란(Diborane)	019287-45-7 디보란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7	산화질소(Nitric oxide)	010102-43-9 산화질소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8	니트로메탄(Nitromethane)	000075-52-5 니트로메탄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9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006484-52-2 질산암모늄 및 이를 33%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0	헥사민(Hexamine)	000100-97-0 헥사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1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007722-84-1 과산화수소 및 이를 3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2	염소산칼륨(Potassium chlorate)	003811-04-9 염소산칼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3	질산칼륨(Potassium nitrate)	007757-79-1 질산칼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4	과염소산칼륨(Potassium perchlorate)	007778-74-7 과염소산칼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5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	007722-64-7 과망간산칼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6	염소산나트륨(Sodium chlorate)	007775-09-9 염소산나트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7	질산나트륨(Sodium nitrate)	007631-99-4 질산나트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8	사린(O-Isopropyl methyl phosphonofluoridate)	000107-44-8 사린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9	염화시아안(Cyanogen chloride)	000506-77-4 염화시아안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비고 : 벤젠, 염화메틸, 시안화수소, 메틸 아크릴레이트, 알릴 클로라이드, 에틸렌디아민, 노말-부틸아민, 트리 에틸아민, 에틸렌이민을 함유하는 혼합물질의 경우에는 대기압(1기압) 아래에서 인화점이 21℃ 이하 인 물질을 사고대비물질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세타밀폐식 또는 클리블랜드 개방식 등의 인화점 측정기에 따라 1기압에서 측정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 입주대상업종은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에 입주하는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대상 업종이 계획되어 있음			

【변경】																																																																											
구 분	업종																																																																										
불허업종 (입주제한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상 각 용지별로 정하고 있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입주업체의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현 단계에서 각 업체별 생산과정, 공종별 대기오염물질 발생과정, 저감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추후 개별업체의 입주전 해당 법률 등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여 판단하고,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함은 물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 • 사업지구 내 입주업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물질 발생이 많은 공정 포함업체는 가능한 우선 배제토록 할 계획이며, 입주가 불가피할 경우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인근 지역에 미치는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기입주 계약된 업체에도 동 배출기준 적용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특정대기유해물질</th> </tr> </thead> <tbody> <tr><td>1. 카드뮴 및 그 화합물</td><td>19. 이황화메틸</td></tr> <tr><td>2. 시안화수소</td><td>20. 아닐린</td></tr> <tr><td>3. 납 및 그 화합물</td><td>21. 클로로포름</td></tr> <tr><td>4. 폴리염화비페닐</td><td>22. 포름알데히드</td></tr> <tr><td>5. 크롬 및 그 화합물</td><td>23. 아세트알데히드</td></tr> <tr><td>6. 비소 및 그 화합물</td><td>24. 벤지딘</td></tr> <tr><td>7. 수은 및 그 화합물</td><td>25. 1,3-부타디엔</td></tr> <tr><td>8. 프로필렌 옥사이드</td><td>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td></tr> <tr><td>9. 염소 및 염화수소</td><td>27. 에틸렌옥사이드</td></tr> <tr><td>10. 불소화물</td><td>28. 디클로로메탄</td></tr> <tr><td>11. 석 면</td><td>29. 스틸렌</td></tr> <tr><td>12. 니켈 및 그 화합물</td><td>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td></tr> <tr><td>13. 염화비닐</td><td>31. 1,2-디클로로에탄</td></tr> <tr><td>14. 다이옥신</td><td>32. 에틸벤젠</td></tr> <tr><td>15. 페놀 및 그 화합물</td><td>33. 트리클로로에틸렌</td></tr> <tr><td>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td><td>34. 아크릴로니트릴</td></tr> <tr><td>17. 벤 젠</td><td>35. 히드라진</td></tr> <tr><td>18. 사염화탄소</td><td></td></tr> </tbody> </table>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특정수질유해물질</th> </tr> </thead> <tbody> <tr><td>1. 구리와 그 화합물</td><td>17. 1, 1-디클로로에틸렌</td></tr> <tr><td>2. 납과 그 화합물</td><td>18. 1, 2-디클로로에탄</td></tr> <tr><td>3. 비소와 그 화합물</td><td>19. 클로로포름</td></tr> <tr><td>4. 수은과 그 화합물</td><td>20. 1,4-다이옥산</td></tr> <tr><td>5. 시안화합물</td><td>2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td></tr> <tr><td>6. 유기인 화합물</td><td>22. 염화비닐</td></tr> <tr><td>7. 6가크롬 화합물</td><td>23. 아크릴로니트릴</td></tr> <tr><td>8. 카드뮴과 그 화합물</td><td>24. 브로모포름</td></tr> <tr><td>9. 테트라클로로에틸렌</td><td>25. 아크릴아미드</td></tr> <tr><td>10. 트리클로로에틸렌</td><td>26. 나프탈렌</td></tr> <tr><td>11. 페놀류</td><td>27. 폼알데하이드</td></tr> <tr><td>12. 폴리클로리네이트드바이페닐</td><td>28. 에피클로로하이드린</td></tr> <tr><td>13. 셀레늄과 그 화합물</td><td>29. 페놀</td></tr> <tr><td>14. 벤젠</td><td>30. 펜타클로로페놀</td></tr> <tr><td>15. 사염화탄소</td><td>31. 스티렌</td></tr> <tr><td>16. 디클로로메탄</td><td>32.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td></tr> <tr><td></td><td>33. 안티몬</td></tr> </tbody> </table> 	특정대기유해물질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9. 이황화메틸	2. 시안화수소	20. 아닐린	3. 납 및 그 화합물	21. 클로로포름	4. 폴리염화비페닐	22. 포름알데히드	5. 크롬 및 그 화합물	23. 아세트알데히드	6. 비소 및 그 화합물	24. 벤지딘	7. 수은 및 그 화합물	25. 1,3-부타디엔	8. 프로필렌 옥사이드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9. 염소 및 염화수소	27. 에틸렌옥사이드	10. 불소화물	28. 디클로로메탄	11. 석 면	29. 스틸렌	12. 니켈 및 그 화합물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3. 염화비닐	31. 1,2-디클로로에탄	14. 다이옥신	32. 에틸벤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33. 트리클로로에틸렌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34. 아크릴로니트릴	17. 벤 젠	35. 히드라진	18. 사염화탄소		특정수질유해물질		1. 구리와 그 화합물	17. 1, 1-디클로로에틸렌	2. 납과 그 화합물	18. 1, 2-디클로로에탄	3. 비소와 그 화합물	19. 클로로포름	4. 수은과 그 화합물	20. 1,4-다이옥산	5. 시안화합물	2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6. 유기인 화합물	22. 염화비닐	7. 6가크롬 화합물	23. 아크릴로니트릴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24. 브로모포름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5. 아크릴아미드	10. 트리클로로에틸렌	26. 나프탈렌	11. 페놀류	27. 폼알데하이드	12. 폴리클로리네이트드바이페닐	28. 에피클로로하이드린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29. 페놀	14. 벤젠	30. 펜타클로로페놀	15. 사염화탄소	31. 스티렌	16. 디클로로메탄	32.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33. 안티몬
	특정대기유해물질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9. 이황화메틸																																																																									
	2. 시안화수소	20. 아닐린																																																																									
3. 납 및 그 화합물	21. 클로로포름																																																																										
4. 폴리염화비페닐	22. 포름알데히드																																																																										
5. 크롬 및 그 화합물	23. 아세트알데히드																																																																										
6. 비소 및 그 화합물	24. 벤지딘																																																																										
7. 수은 및 그 화합물	25. 1,3-부타디엔																																																																										
8. 프로필렌 옥사이드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9. 염소 및 염화수소	27. 에틸렌옥사이드																																																																										
10. 불소화물	28. 디클로로메탄																																																																										
11. 석 면	29. 스틸렌																																																																										
12. 니켈 및 그 화합물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3. 염화비닐	31. 1,2-디클로로에탄																																																																										
14. 다이옥신	32. 에틸벤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33. 트리클로로에틸렌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34. 아크릴로니트릴																																																																										
17. 벤 젠	35. 히드라진																																																																										
18. 사염화탄소																																																																											
특정수질유해물질																																																																											
1. 구리와 그 화합물	17. 1, 1-디클로로에틸렌																																																																										
2. 납과 그 화합물	18. 1, 2-디클로로에탄																																																																										
3. 비소와 그 화합물	19. 클로로포름																																																																										
4. 수은과 그 화합물	20. 1,4-다이옥산																																																																										
5. 시안화합물	2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6. 유기인 화합물	22. 염화비닐																																																																										
7. 6가크롬 화합물	23. 아크릴로니트릴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24. 브로모포름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5. 아크릴아미드																																																																										
10. 트리클로로에틸렌	26. 나프탈렌																																																																										
11. 페놀류	27. 폼알데하이드																																																																										
12. 폴리클로리네이트드바이페닐	28. 에피클로로하이드린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29. 페놀																																																																										
14. 벤젠	30. 펜타클로로페놀																																																																										
15. 사염화탄소	31. 스티렌																																																																										
16. 디클로로메탄	32.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33. 안티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기입주 계약된 업체에도 동 배출기준 적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기입주 계약된 업체에도 동 배출기준 적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기입주 계약된 업체에도 동 배출기준 적용함) 																																																																										

※ 입주대상업종은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에 입주하는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대상 업종이 계획되어 있음

구 분	업 종																																																			
불허업종 (입주제한 업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도시·군계획시설로 분류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32 539 699 607">교통시설 (11개)</td> <td data-bbox="699 539 1361 607">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td> </tr> </table>	교통시설 (11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교통시설 (11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32 607 699 640">공간시설 (5개)</td> <td data-bbox="699 607 1361 640">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td> </tr> </table>	공간시설 (5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공간시설 (5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32 640 699 696">유통·공급시설 (9개)</td> <td data-bbox="699 640 1361 696">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통저장 및 송유설비</td> </tr> </table>	유통·공급시설 (9개)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통저장 및 송유설비																																																	
	유통·공급시설 (9개)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통저장 및 송유설비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32 696 699 763">공공·문화체육시설 (10개)</td> <td data-bbox="699 696 1361 763">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td> </tr> </table>	공공·문화체육시설 (10개)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10개)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32 763 699 819">방재시설 (8개)</td> <td data-bbox="699 763 1361 819">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td> </tr> </table>	방재시설 (8개)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방재시설 (8개)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32 819 699 887">보건위생시설 (7개)</td> <td data-bbox="699 819 1361 887">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도축장,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td> </tr> </table>	보건위생시설 (7개)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도축장,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보건위생시설 (7개)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도축장,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32 887 699 920">환경기초시설 (4개)</td> <td data-bbox="699 887 1361 920">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td> </tr> </table>	환경기초시설 (4개)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환경기초시설 (4개)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의거 사고대비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 사고대비물질별 수량기준																																																				
(단위: 톤)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32 1055 520 1122">번호</th> <th data-bbox="520 1055 1142 1122">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th> <th data-bbox="1142 1055 1246 1122">하위 규정수량</th> <th data-bbox="1246 1055 1361 1122">상위 규정수량</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32 1122 520 1189">1</td> <td data-bbox="520 1122 1142 1189">포르말린 또는 포름알데히드(폼알데하이드)[Formalin; Formaldehyde ; 50-00-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td> <td data-bbox="1142 1122 1246 1189">2</td> <td data-bbox="1246 1122 1361 1189">400</td> </tr> <tr> <td data-bbox="432 1189 520 1256">2</td> <td data-bbox="520 1189 1142 1256">메틸히드라진(메틸하이드라진)[Methylhydrazine ; 60-3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td> <td data-bbox="1142 1189 1246 1256">1</td> <td data-bbox="1246 1189 1361 1256">20</td> </tr> <tr> <td data-bbox="432 1256 520 1323">3</td> <td data-bbox="520 1256 1142 1323">포름산(폼산)[Formic acid ; 64-1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td> <td data-bbox="1142 1256 1246 1323">5</td> <td data-bbox="1246 1256 1361 1323">40</td> </tr> <tr> <td data-bbox="432 1323 520 1391">4</td> <td data-bbox="520 1323 1142 1391">메틸알코올[Methylalcohol ; 67-56-1]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td> <td data-bbox="1142 1323 1246 1391">2</td> <td data-bbox="1246 1323 1361 1391">400</td> </tr> <tr> <td data-bbox="432 1391 520 1458">5</td> <td data-bbox="520 1391 1142 1458">벤젠[Benzene ; 71-43-2]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td> <td data-bbox="1142 1391 1246 1458">2</td> <td data-bbox="1246 1391 1361 1458">20</td> </tr> <tr> <td data-bbox="432 1458 520 1525">6</td> <td data-bbox="520 1458 1142 1525">염화메틸[Methyl chloride ; 74-87-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td> <td data-bbox="1142 1458 1246 1525">2</td> <td data-bbox="1246 1458 1361 1525">20</td> </tr> <tr> <td data-bbox="432 1525 520 1592">7</td> <td data-bbox="520 1525 1142 1592">메틸아민[Methylamine ; 74-8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td> <td data-bbox="1142 1525 1246 1592">2</td> <td data-bbox="1246 1525 1361 1592">20</td> </tr> <tr> <td data-bbox="432 1592 520 1659">8</td> <td data-bbox="520 1592 1142 1659">시안화수소(사이안화수소)[Hydrogen cyanide ; 74-9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td> <td data-bbox="1142 1592 1246 1659">0.6</td> <td data-bbox="1246 1592 1361 1659">3</td> </tr> <tr> <td data-bbox="432 1659 520 1727">9</td> <td data-bbox="520 1659 1142 1727">염화비닐(염화 바이닐)[Vinyl chloride ; 75-01-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td> <td data-bbox="1142 1659 1246 1727">2</td> <td data-bbox="1246 1659 1361 1727">400</td> </tr> <tr> <td data-bbox="432 1727 520 1794">10</td> <td data-bbox="520 1727 1142 1794">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 75-15-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td> <td data-bbox="1142 1727 1246 1794">2</td> <td data-bbox="1246 1727 1361 1794">20</td> </tr> <tr> <td data-bbox="432 1794 520 1861">11</td> <td data-bbox="520 1794 1142 1861">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 75-21-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td> <td data-bbox="1142 1794 1246 1861">2</td> <td data-bbox="1246 1794 1361 1861">20</td> </tr> <tr> <td data-bbox="432 1861 520 1933">12</td> <td data-bbox="520 1861 1142 1933">포스겐[Phosgene ; 75-4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td> <td data-bbox="1142 1861 1246 1933">0.3</td> <td data-bbox="1246 1861 1361 1933">1.5</td> </tr> </tbody> </table>	번호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하위 규정수량	상위 규정수량	1	포르말린 또는 포름알데히드(폼알데하이드)[Formalin; Formaldehyde ; 50-00-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2	메틸히드라진(메틸하이드라진)[Methylhydrazine ; 60-3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20	3	포름산(폼산)[Formic acid ; 64-1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4	메틸알코올[Methylalcohol ; 67-56-1]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5	벤젠[Benzene ; 71-43-2]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6	염화메틸[Methyl chloride ; 74-87-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7	메틸아민[Methylamine ; 74-8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8	시안화수소(사이안화수소)[Hydrogen cyanide ; 74-9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6	3	9	염화비닐(염화 바이닐)[Vinyl chloride ; 75-01-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10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 75-15-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11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 75-21-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12	포스겐[Phosgene ; 75-4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번호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하위 규정수량	상위 규정수량																																																	
1	포르말린 또는 포름알데히드(폼알데하이드)[Formalin; Formaldehyde ; 50-00-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2	메틸히드라진(메틸하이드라진)[Methylhydrazine ; 60-3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20																																																	
3	포름산(폼산)[Formic acid ; 64-1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4	메틸알코올[Methylalcohol ; 67-56-1]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5	벤젠[Benzene ; 71-43-2]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6	염화메틸[Methyl chloride ; 74-87-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7	메틸아민[Methylamine ; 74-8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8	시안화수소(사이안화수소)[Hydrogen cyanide ; 74-9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6	3																																																	
9	염화비닐(염화 바이닐)[Vinyl chloride ; 75-01-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10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 75-15-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11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 75-21-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12	포스겐[Phosgene ; 75-4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경 기 도 보

제7286호

2023. 7. 3. (일)

13	트리메틸아민[Trimethylamine ; 75-5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14	산화 프로필렌[Propylene oxide ; 75-56-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15	메틸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 ; 78-9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16	메틸비닐케톤[Methyl vinyl ketone ; 78-9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400
17	아크릴산[Acrylic acid ; 79-10-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18	메틸아크릴레이트[Methyl acrylate ; 96-3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19	니트로벤젠(나이트로벤젠)[Nitrobenzene ; 98-95-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20	4-니트로톨루엔(4-나이트로톨루엔)[4-Nitrotoluene ; 99-99-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21	벤질클로라이드[Benzyl chloride ; 100-4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20
22	아크롤레인[Acrolein ; 107-02-8]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20
23	알릴클로라이드[Allyl chloride ; 107-0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24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로나이트릴)[Acrylonitrile ; 107-13-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25	에틸렌디아민(에틸렌다이아민)[Ethylenediamine ; 107-15-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20
26	알릴알코올[Allyl alcohol ; 107-1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
27	m-크레졸(m-크레솔)[m-Cresol ; 108-39-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8	40
28	톨루엔[Toluene ; 108-88-3]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29	페놀[Phenol ; 108-95-2]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8	40
30	n-부틸아민(n-부틸아민)[n-Butylamine ; 109-73-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31	트리메틸아민(트라이메틸아민)[Triethylamine ; 121-44-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32	아세트산에틸[Ethyl acetate ; 141-7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33	시아나화나트륨(사이안화나트륨)[Sodium cyanide ; 143-3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 · 황혈염(Potassium ferrocyanide) · 적혈염(Potassium ferri-cyanide)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질은 제외한다.	2	20

경 기 도 보

제7286호

2023. 7. 3. (일)

34	에틸렌이민[Ethylenimine ; 151-5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40
35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2,4-TDI) ; 584-84-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36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 630-08-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37	아크릴로일클로라이드[Acryloyl chloride ; 814-6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40
38	인화아연[Zinc phosphide ; 1314-84-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20
39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Methyl ethyl ketone peroxide ; 1338-23-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20
40	디이소시아산이소포론(다이아이소사이안산 아이소포론)[Isophorone diisocyanate ; 4098-71-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20
41	나트륨[Sodium ; 7440-2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42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 7647-01-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5*	400*
43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린화 수소)[Hydrogen fluoride ; 7664-39-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4*	20*
44	암모니아[Ammonia ; 7664-41-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
		20*	400*
45	황산[Sulfuric acid ; 7664-93-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0
46	질산[Nitric acid ; 7697-37-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0
47	삼염화인[Phosphorus trichloride ; 7719-1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20
48	불소[Fluorine ; 7782-41-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49	염소[Chlorine ; 7782-50-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20
50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 7783-0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51	아르신 또는 삼수소화비소[Arsine; Arsenic trihydride ; 7784-42-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52	클로로술폰산(클로로설폰산)[Chlorosulfonic acid ; 7790-94-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20
53	포스핀[Phosphine ; 7803-51-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54	옥시염화인[Phosphorus oxychloride ; 10025-8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55	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 ; 10049-04-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40
56	디보란(다이보레인)[Diborane ; 19287-45-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57	산화질소[Nitric oxide ; 10102-4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경 기 도 보

제7286호

2023. 7. 3. (일)

58	니트로메탄(나이트로메테인)[Nitromethane ; 75-52-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59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 6484-52-2] 및 이를 33%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60
60	헥사민[Hexamine ; 100-97-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2	60
61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 7722-84-1] 및 이를 3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60
62	염소산칼륨[Potassium chlorate ; 3811-04-9]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10
63	질산칼륨[Potassium nitrate ; 7757-79-1]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60
64	과염소산칼륨[Potassium perchlorate ; 7778-74-7]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10
65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 ; 7722-64-7]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200
66	염소산나트륨[Sodium chlorate ; 7775-09-9]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10
67	질산나트륨[Sodium nitrate ; 7631-99-4]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60
68	사린[O-Isopropyl methyl phosphonofluoridate ; 107-44-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69	염화시아니드[Cyanogen chloride ; 506-77-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70	니켈카르보닐[Nickel carbonyl ; 13463-39-3]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71	모노게르만 또는 사수소화게르마늄(Germane ; Germanium tetrahydride ; 7782-65-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72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Tetrafluoroethylene ; 116-14-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73	트리플루오로보란(트라이 플루오로 보란)[Trifluoroborane ; 7637-07-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74	트리클로로붕소[Boron trichloride ; 10294-3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75	헥사플루오로-1,3-부타디엔(헥사플루오로-1,3-부타다이엔) [Hexafluoro-1,3-butadiene ; 685-6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76	브롬[Bromine ; 7726-95-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77	세렌화수소(셀레늄화 수소)[Hydrogen selenide ; 7783-0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78	이소프렌(아이소프렌)[Isoprene ; 78-7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
79	1,1-디클로로에틸렌(1,1-다이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 75-35-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경 기 도 보

제7286호

2023. 7. 3. (일)

80	헥사메틸디실록산[Hexamethyl disiloxane ; 107-4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1	펜타카르보닐철[Pentacarbonyl iron ; 13463-40-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2	오불화브롬[Bromine pentafluoride ; 7789-30-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3	염화티오닐(염화싸이오닐)[Thionyl chloride ; 7719-0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4	사염화타이타늄(사염화타이타늄)[Titanium tetrachloride ; 7550-4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5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 76-0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6	비닐에틸에테르[Vinyl ethyl ether ; 109-9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
87	실란(실레인)[Silane ; 7803-62-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88	디실란(다이실레인)[Disilane ; 1590-87-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89	디클로로실란(다이클로로실레인)[Dichlorosilane ; 4109-96-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90	트리클로로실란(트라이클로로실레인) [Trichlorosilane ; 10025-78-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1	메틸디클로로실란(메틸다이클로로실레인) [Methyldichlorosilane ; 75-5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2	메틸트리클로로실란(메틸트라이클로로실레인) [Methyltrichlorosilane ; 75-79-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3	트리클로로비닐실란[Trichlorovinylsilane ; 75-9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4	에틸트리클로로실란[Trichloroethylsilane ; 115-21-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5	테트라메틸실란(테트라메틸 실레인) [Tetramethylsilane ; 75-76-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6	테트라클로로실리콘(테트라클로로실리콘)[Silicon Tetrachloride; 10026-0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7	테트라플루오로실리콘[Silicon tetrafluoride ; 7783-61-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비고

1. 규정수량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사용시설과 보관·저장시설에서 최대로 체류(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2. 제1호의 규정수량에도 불구하고 42번, 43번 및 44번의 물질은 상온·상압조건에서 성상이 액체인 경우 *표시된 값을 규정수량으로 한다.
3. 규정수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입주자격(변경)	
【기정】	
구 분	입주자격
산업시설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대상 업종의 유치/ 공급을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지구내에 포함되어 불가피한 이주대상이 된 업체중 본 단지에 재입주하여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복합시설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물에 입주를 허가하는 자 관련법령 및 김포시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지원시설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단지 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에서 정한 주거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복합시설용지 등 용도에 따라 관련법령 및 김포시 관련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개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또는 본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 본 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원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공모조건에 참여가 가능한 실수요자 또는 본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
공공시설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법령 및 김포시 관련 조례에 따라,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차장, 학교시설용지 등 용도에 따라 적합하게 개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또는 공공시설 사업자
※ 실수요자 : 이주대상이 된 업체중 본 단지에 재입주하려는 업체이거나,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사업시행자가 단지의 가치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당선된 자로 한정함	
【변경】	
구 분	입주자격
산업시설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대상 업종의 유치/ 공급을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지구내에 포함되어 불가피한 이주대상이 된 업체중 본 단지에 재입주하여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력발전업(35114)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단, 건축물(지붕 및 옥상)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복합시설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대상 업종의 유치/ 공급을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물에 입주를 허가하는 자 관련법령 및 김포시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력발전업(35114)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단, 건축물(지붕 및 옥상)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시설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단지 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에서 정한 주거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복합시설용지 등 용도에 따라 관련법령 및 김포시 관련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개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또는 본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 본 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원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공모조건에 참여가 가능한 실수요자 또는 본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
공공시설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법령 및 김포시 관련 조례에 따라,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차장, 학교시설용지 등 용도에 따라 적합하게 개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또는 공공시설 사업자
※ 실수요자 : 이주대상이 된 업체중 본 단지에 재입주하려는 업체이거나,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사업시행자가 단지의 가치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당선된 자로 한정함	

4) 입주우선순위(변경없음)

산업시설 구역	(1)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어 입주한 업체 또는 이전이 불가피한 기업 (2)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등을 현상설계 또는 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원형지로 공급하는 것에 참여하는 공모사업자 또는 공모자금(공모리츠, 부동산 펀드 등)을 활용하는 사업자 (3) 김포시 관내에서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산업단지 개발계획에서 주요유치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4) 산업단지 개발계획에서 주요유치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고자 하는 자 또는 도내에 동일 업종등록을 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기업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요유치업종과 일치하는 업체로서 도내 공장등록을 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기업 (6) 지역의 유치업종의 전략적 유치, 본사 이전기업, 입지효과가 큰 기업 등 관리기관의 추천이 있는 기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8) 기타 입주자격을 갖추고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
산업시설 구역 외	(1) 공공시설구역의 경우에는 승인시 협의된 협의기관(학교 등) (2) 관련법률 및 지침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산업단지 활성화 또는 가치향상을 도모하도록 사업시행자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할 실수요자 (3) 분양공고 등 관련법률 및 지침의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실수요자 (4)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입주를 허가하는 자

※ (1)~(8)은 순위를 표시하며, 우선 순위에 따라 입주시키되 동일순위 경합시에는 추첨하여 선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분양 공고전)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음

5) 입주절차(변경없음)

- 산업집적법 제38조,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5일 이내(5일 연장 가능)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계약 확인서를 발급한다.
-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토지소유자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 공급대상 분양토지에 대해 제안서를 통한 공모사업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실수요자는 토지소유자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6) 분양한도(분할 등)(변경없음)

- 최소분양면적 : 산업집적법 제39조의2, 시행규칙 제39조의3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의 합병 및 분할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적용한다. 단 용지의 최소규모는 1,6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어 입주한 업체 또는 이전이 불가피한 기업에 공급되는 용지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 할 수 있다.

마. 사후관리계획(변경)

1) 산업시설용지 관리(변경없음)

-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 지침,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하여야 함

2) 환경관리(변경)

【기정】

- 입주업체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함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내 적정 처리 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함
- 산업단지내 공원과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인근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최소화
- 재활용을 제외한 폐기물은 위탁하여 처리함

【변경】

- 입주업체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함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내 적정 처리 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함
- 산업단지내 공원과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인근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최소화
- 재활용을 제외한 폐기물은 위탁하여 처리함
- 폐수 발생업체는 입주를 제한(「물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3]의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중 제1종~제4종사업장 입주 제한. 단, 제5종 사업장에 한하여 발생폐수 전량 위탁처리 시 입주 허용)하고, 또한, 배출시에 배출허용기준을 준수(전량 위탁처리 포함)하도록 함
- 태양력발전업(D35)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운용 및 폐기 등 모든 과정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3) 안전관리(변경없음)

- 「산업집적법」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를 위해 관계기관 등과 재해복구 협조체계 구축
- 유관기관의 비상연락망 구축

4) 기반시설지원(변경없음)

-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변경없음)

1) 기본방향(변경없음)

- 입주기업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행정, 우정, 소방, 통신, 금융·보험, 복리후생, 교육연구시설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 규정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 해당 실수요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함
-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

2) 공장설립 지원(변경없음)

- 공장설립 업무 인·허가 절차 대행 및 현지출장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신고시 완료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

3) 생산활동 지원(변경없음)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 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
- 기술개발 및 수출, 무역, 박람회 등 산업정보 제공
- 구인·구직의 날 운영 등 산업인력 수급 지원
- 각종 지원시책 추진 시 우대

4) 고용증대 및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변경없음)

-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공단 등을 통한 근로자의 기술능력향상 교육 실시
- 단지내 근로자복지회관, 어린이집 등을 통한 근로자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유희 여성 인력의 취업기회 부여

5) 경영 및 기술개발 지원(변경없음)

-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활동 지원
- 생산시설의 자동화를 위한 기술 및 정보 제공
- 입주기업체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6) 지원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관리청사, 금융시설, 후생복지, 차량관련시설, 공공업무시설 등

사. 기타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중소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 분양용지의 불법전매·장기 유희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 산업단지계획 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시 관련기관 협의/조치사항은 사업시행자 및 입주업체가 협의하여 시행함
 - 환경영향평가 관련 : 계획생태 면적율(20.5%) 달성 협조를 위한 조경면적 확보
-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 및 김포시 조례에 따름

- 붙 임
1. 붙임도면 (1) : 위치도(변경없음)
 2. 붙임도면 (2) : 개발계획도(변경)
 3. 붙임도면 (3) : 주요유치업종 배치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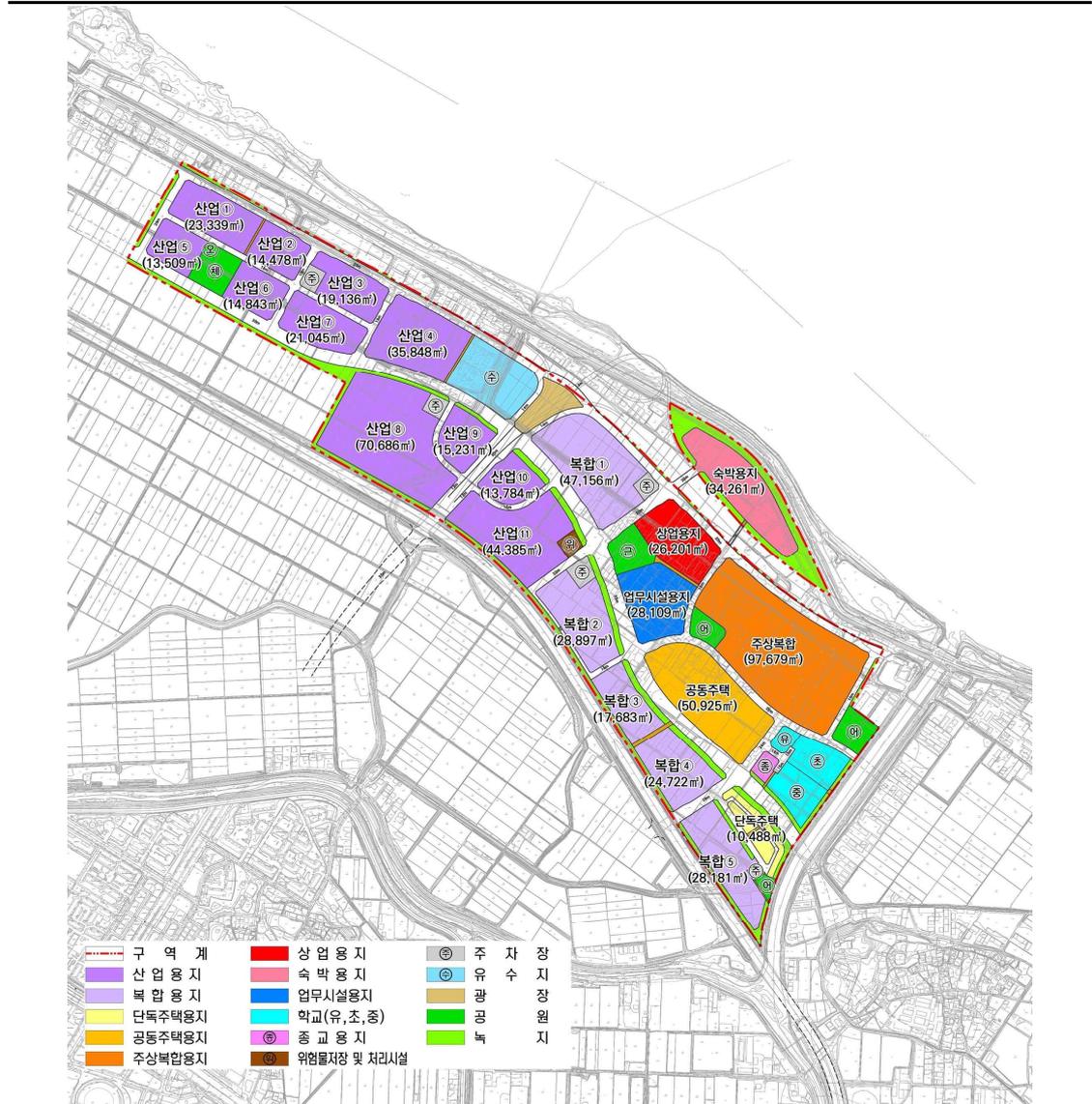
【붙임도면 1 : 위치도】(변경없음)



【붙임도면 2 : 개발계획도】(변경)

【기정】

< 토지이용계획도 >



【변경】

< 토지이용계획도 >

